

2011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1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제4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임명 및 취임



박희태 국회의장은 3월 4일 주영진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제4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앞서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무성)는 3월 3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임명동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주영진 처장은 3월 7일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을 가졌다.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과정의 초기부터 국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개최하였다.

●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 예산의 재정총량과 자원배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 번째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010회계연도 결산설명회 개최



8월 16~17일, 국회예산정책처 대회의실 및 국회 의원식당에서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예결위원 17인 및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012년도 예산안 설명회 개최



11월 3일과 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예결위원 및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012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협약



8~10월, 「2012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의 정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28개 정부 부처 및 4개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실시하였다.

● 대외협력



1월 25일,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한 무파마디(Mufamadi) 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원의원 단에게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1월 31일, 알리만 소리(Aliman Sori) 의원 등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의 의원단에게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입법 과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과 주요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3월 21일, 미국 의회 경제·통상 및 정부 분야 보좌관 방문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장과 면담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소개받았다.



6월 8일, IMF 연례협의단 5인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방문, 주영진 처장을 예방하고 경제분석실장 및 관계 직원 들과 재정·금융·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연례협의의를 진행하였다.

● 대외협력



6월 20일, 다그바 볼드바타르(Dagva Boldbaatar) 몽골중앙은행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재정부, 중앙은행 등 몽골경제부처방문단 8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NABO의 경제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6월 27일, 데이비드 부시바이(David Bushby) 호주 연방상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호주 정치차세대지도자 방한단 일행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 재정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8월 18일, 응오 도안 빈(Ngo Doan Vinh)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원장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방문단에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과 기능, 주요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의 대형 국책사업평가 절차, 중기 경제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17일, 우즈베키스탄 재정부의 조세 관련 공무원 방문단(단장: Aziz Toshmatov) 20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 주영진 처장을 예방하였다.

● 예산정책 지식포럼



7월 8일, 건국대 이덕만 교수를 초빙하여 “국회의 연중 예산심의 방안—사전 예산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예산정책 지식포럼을 실시하였다.



8월 19일,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를 초빙하여 “복지재정과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제2회 예산정책 지식포럼을 실시하였다.



9월 26일, 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 연구부장을 초빙하여 “글로벌 재정위기와 재정·금융정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예산정책 지식포럼을 실시하였다.



10월 25일,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를 초빙하여 “한국 조세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4회 예산정책 지식포럼을 실시하였다.

● 핵심역량강화 특강



2월 22일, 서재걸 STC 대한 자연치료 의학회 회장을 초빙하여 “건강도 재능이다”라는 주제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였다.



5월 30일, 구창환 인맥경영연구원 원장을 초빙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SNS의 이해와 운영”이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 이승재 동아이지에듀 총괄 이사를 초빙하여 “대중문화로 배우는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핵심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였다.

● 교육훈련

6월 7~10일,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전 행정실무원을 대상으로 국회지원 조직의 구성 및 기능의 이해, 국회법, 국회 운영 및 위원회 회의 진행 등 국회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7월 11일~22일, 2010년 6월 이후 신규 임용된 직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회 지원조직의 구성·기능 등 기본교육 및 체험·참여형 현장학습 등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11월 21~25일, 신규 임용자 등 직원 20인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입법지원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 2011년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4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세미나실에서 김동건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제4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도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제63회 국회개원 기념식



5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국회개원 기념식을 치렀다.

● 국립현충원 방문 및 참배



6월 3일, 주영진 처장 및 주요 간부들이 제56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현충원을 방문,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에 대한 참배를 실시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



8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황우여 위원장)에서,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 안정화 방안,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석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직제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 「예산정책연구」 학술지편집위원회



11월 30일, 백웅기 위원장(상명대 교수) 등 학술지편집위원 8인이 참석하여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을 위한 2011년도 제1차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장 하반기 포상 및 중무식



12월 29일,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2011년도 하반기 보고서, 조사·분석 회담 및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중무식을 거행하였다.

차 례

I. 연구·분석 업무 / 1

1. 정기 분석보고서	3
※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3
※ 결산분석시리즈 1: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4
※ 결산분석시리즈 2: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4
※ 결산분석시리즈 3: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6
※ 결산분석시리즈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7
※ 결산분석시리즈 5: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	8
※ 결산분석시리즈 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	9
※ 결산분석시리즈 7~10: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총괄, I~III	10
※ 결산분석시리즈 11: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11
※ 결산분석시리즈 12: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12
※ 예산안분석시리즈 1: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13
※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14
※ 예산안분석시리즈 3: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15
※ 예산안분석시리즈 4: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16
※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	17
※ 예산안분석시리즈 6: 2012년도 예산안 총괄	18
※ 예산안분석시리즈 7~9: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II	19
※ 예산안분석시리즈 10: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
※ 예산안분석시리즈 11: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1
※ 2010~2014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22
※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3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1~2015년 경제 전망	24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25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6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7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8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29
※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종합	30
※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9호)	31
※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0호)	32
※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1호)	33
※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2호)	34
※ 사업평가 11-01: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평가—일반회계	35
※ 사업평가 11-02: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	36
※ 사업평가 11-0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37
※ 사업평가 11-04: 국가조달사업 평가	38
※ 사업평가 11-0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39
※ 사업평가 11-06: 정부 규제개혁 평가	40
※ 사업평가 11-07: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41
※ 사업평가 11-08: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	42
※ 사업평가 11-09: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43
※ 사업평가 11-10: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44
※ 사업평가 11-1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45
※ 사업평가 11-12: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46
※ 공공기관평가 11-01: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47
※ 공공기관평가 11-02: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48
※ 공공기관평가 11-03: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9
※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총괄편	50
※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	51
※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I	52
※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V	53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IV	55
※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I~IV	56
※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중점분석 및 총괄평가	57
※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58
※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59

2. 현안·예산정책·특별 보고서	61
※ 예산현안분석	61
·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상 쟁점	61
※ 예산정책보고서	62
· 재정법률 개선과제	62
·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63
※ 특별보고서	62
·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63
·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65
※ 경제현안분석	66
·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66
·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분석	66
·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69
·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70
·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71
·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72
· 경제성장률 단기예측모형—베이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73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75
※ 사업평가현안분석	76
·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76
·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77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78
·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79

II.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요구사항의 조사·분석 업무 / 81

1.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83
가. 2011년 처리 현황	83
나. 최근 5년간 추이	83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84
2. 법안비용추계 현황	86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86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현황	86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비중	87
라. 관련 보고서 발간	89
3.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현황	91
가. 의안비용 관련 세수변화 추계 현황	91
나. 관련 보고서 발간	93

III. 주요 사업 및 활동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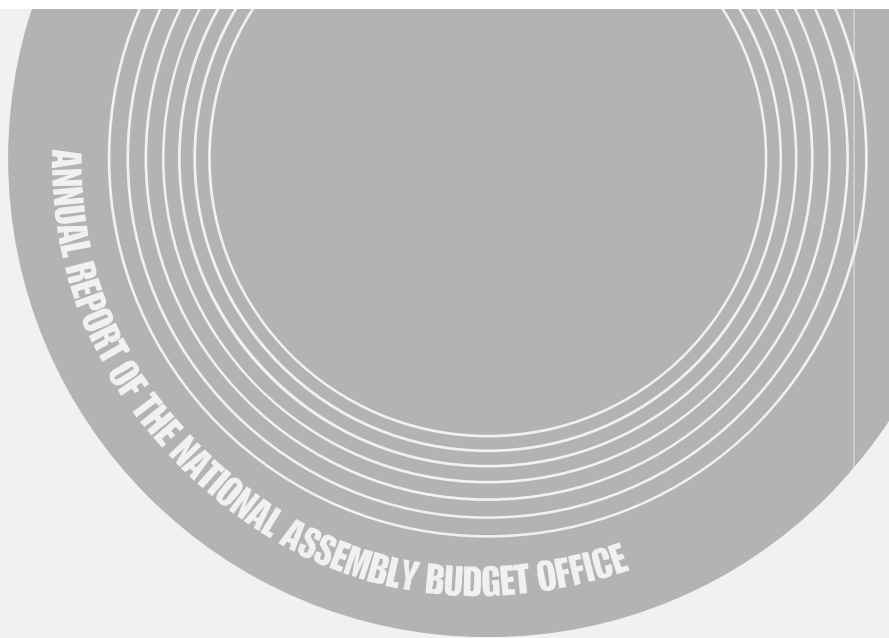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97
가.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97
나.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 배분	104
다.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108
라. 교섭단체 예결위원 대상 예산안 및 결산 분석 보고	113
마. 의원 대면보고 현황	113
바. NABO 재정현안 메일링 서비스 현황	115
2.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116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116
나. 포럼 현황	118
3. 정보화 사업	122

4. 예산정책 지식포럼	127
5. 대외협력	132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34
7. 교육훈련 현황	136
8. 연구직공무원 제도 도입·운영	137
9. 2011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138
10. 연구용역 현황	140
11. 직원연구모임 현황	143

IV. 부 록 / 145

1. 조직 및 예산	147
가. 조 직	147
나. 예 산	148
2. 연 혁	149
3.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148
가. 국회법	150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150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153
라. 법규 제·개정 현황	159
4. 언론보도 현황	163
5. 발간물 총 목록	164
가. 정기 분석보고서	164
나. 현안·예산정책·법안비용추계·특별 보고서	166
다. 정기간행물	168

I. 연구·분석 업무



1. 정기 분석보고서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 발간일: 2011년 2월 23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431-9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종전에 발간된 「대한민국 재정」이 재정제도와 이론 분야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2011년도 예산의 심사내역과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은 최초의 ‘확정예산 분석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결과를 상세히 정리하여 예산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분야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내용을 담았으며, 필수적인 재정 관련 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함으로써 2011년 대한민국 재정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효율적으로 행사함과 동시에 확정예산에 투영된 국회

의 재정의지 내지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이 책의 목적 중 하나이다.

본 책은 총 2부 22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2011년도 재정의 개요와 방향, 재정건전성, 국회 예산심사 내역 등을 정리하였다. 국회의 독자적인 거시경제전망에 기초하여 2011년 재정운용여건을 검토하였고, 정부지출 규모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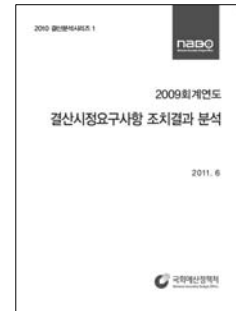
제2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 사업을 심도 있게 정리·분석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 재정현황 및 국회심의결과와 주요 재정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록에는 주요 재정통계를 경제 및 재정 총량지표와 분야별 재정통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재정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1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 발간일 : 2011년 6월 2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51-7 93350



본 보고서는 국회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국회의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와 예산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5건의 감사요구, 1,039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요구수준별로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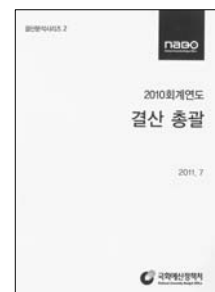
325건, 시정 310건의 순이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건수를 살펴보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노동위원회 87건, 행정안전위원회 86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5건, 지식경제위원회 8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결산시정요구사항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시정요구 이행이 미흡한 사항,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7건의 주제를 선정하여, 결산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2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 발간일 : 2011년 7월 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54-8 93350



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확정된 예산의 집행결과와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산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시리즈」 중 두 번째 보고서로서 재정운용 여건, 2010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내역, 2010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상의 특징, 재정규모,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2010년 재정집행의 특징은 2009년에 이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과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33.2조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었다는 점이다.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18

개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55.3조원보다 5.9조원 많은 261.2조원이고, 총세출결산액은 총세입액의 95.2%인 248.7조원이다.

2010회계연도 말 63개 기금의 총 수납액은 479.6조원으로 수입계획액(수정)에 비해 6.4조원 감소된 규모이며, 총 지출액은 479.6조원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6.7조원 증가되었다.

2010년 통합재정수입은 270.9조원으로 예산 대비 8.7조원 많으며 수입증가율은 2009년에 비해 8.1%p 증가한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254.2조원으로 예산 대비 10.0조원,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0년 통합재정수지는 16.7조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는 18.7조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34.3조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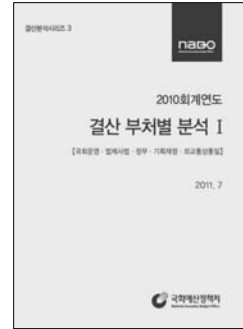
관리대상수지도 △13.0조원으로 2010년 예산(△30.1조원) 대비 17.1조원, 전년 대비 30.2조원 개선되었다. 이러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2010년 중 경기호조로 인한 수입 확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순융자가 저조한 것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11년에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410개의 성과지표 중 4,476개의 성과지표가 달성되어 82.7%의 성과달성도를 보였다.

결산분석시리즈 3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 발간일 : 2011년 7월 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55-5 9335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은 국회운영분야(9개 주제), 법제사법분야(18개 주제), 정부분야(23개 주제), 기획재정부분야(41개 주제), 외교통상통일분야(19개 주제) 등 총 110개 개별 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분야에서는 대통령실 경호훈련원 신축부지의 활용 문제, 특임장관실의 특임활동 예산 운용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분야에서는 법무부 국제연수과정 운영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 정부법무공단의 경쟁력 약화 문제, 헌법재판소 특정업무경비의 목적 외 사용 문제, 대법원 전자도서관개발 사업 연구개발비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정부위원회 분야에서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사업추진 사업의 중복 문제, 출연연구기관의 결산잉여금 처리 규정 위반 문제, 국가보훈처 영구귀국정착금 추계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문제,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의 성과 미흡 문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환

급사업의 연례적 초과집행 문제,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장려기금의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미흡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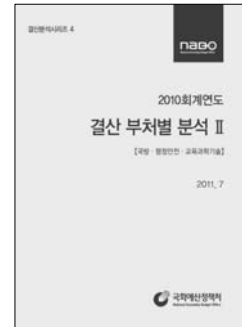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위원회 분야에서는 기업은행 주식 매각대의 연례적 과다계상 문제, 물납 비상장 주식의 회수율 저조 문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평가 공정성 미흡 문제, 대개도국 차관사업의 비구속성 원조실적 부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 관리 문제, 국제청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 문제, 관세청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허가의 부적정 문제, 조달청 비축물자의 저조한 방출실적, 통계청 지방청 인건비의 불용액 과다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분야에서는 재외공관 행정원의 비체계적 운용 문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의 사업절차 지연 문제, KOICA 자체수입의 과소계상 문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의 부적절한 예산 이용 문제, 북한정세지수의 비공개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 발간일 : 2011년 7월 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56-2 9335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는 각 부처의 재정운용구조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분석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 중 국방부의 주요 결산 분석사항에서는 급여정책 프로그램의 향토방위군무원 과다 운영 문제, 특수장비획득사업의 사업계획 부실문제, 국방IPTV의 시청료 과다계상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방위사업청의 주요 결산 분석사항에서는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신개념 기술시범사업의 사업계획 부실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 중 행정안전부의 주요 결산 분석사항에서는 기타경상이전 수입의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 미흡의 문제, 정보화마을조성의 정보화마을간 소득격차 및 정보화격차의 문제, 지역발전활성화의 행사홍보성 예산집행의 문제 등

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주요 결산 분석사항에서는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 운영의 보조금 관리 미흡의 문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의 보조금 관리 미흡 및 교육실적 부진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주요 결산 분석사항에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의 지원대상 축소 부적정의 문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의 예산 총액 편성 및 예산 배분기준 부적정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결산 분석사항에서는 재외선거관리의 예산의 목적의 사용 및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결산 분석사항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출연의 ICL 수요 과다 추정에 따른 불용 과다의 문제, 국립대학 인건비의 연례적 전용 부적절의 문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의 평가 관리 체계 미흡의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 산정 부적절의 문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기술료 감면 기준 부적절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5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

- 발간일 : 2011년 7월 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57-9 9335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등 3개 위원회 소관 사업의 결산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37개 주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58개 주제), 지식경제위원회(48개 주제)의 결산현안에 관한 143개 개별 주제를 발굴·분석하였으며,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주요사업의 문제점 등을 ‘결산분석 요약’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불이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자수입 처리 부적정,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의 법적근거 미흡,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광특회계 보조금 이월한도 위반,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수시배정사업)의 관리 미흡,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규모 부적정, 국가이미지 광고 방

영시기의 하반기 편중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의 보조금 교부 부적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의 불합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장기 연체자와 연체금액 증가,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의 성과미흡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용, 농업용저수지 득높이기사업의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 구제역 관련 결산 현황과 문제점, 쌀 관련 사업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 계속, 직접지불사업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에서는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 부적정,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예비비 추가출연 필요성 미흡,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출연연의 O/H 수입예산 편성 부적정,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사업(R&D)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위반,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투자 실적 저조,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사업의 대기업 지원 부적정 등을 분석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

- 발간일 : 2011년 7월 1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58-6 93350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강조된 2010년에 복지, 노동, 환경, SOC 분야 등에서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5개 주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주제,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9개 주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9개 주제 등 총 126개 개별 주제를 발굴·분석하였으며,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주요사업의 문제점 등을 ‘결산 주요 분석사항’에서 정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무지출 비중과다로 인한 예산편성의 경직성 문제, 주거급여사업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국토해양부)과 유사 문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예비비 배정의 적정성 문제, 근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연례적 예산 과소계상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 중 환경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수도 확충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및 자체내역변경 빈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실적 부진, 전남 여수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에서 자체 내역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관리사업에서 지자체 추진실적 부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고용노동부 분석에서는 기금에 편중된 재정운용, 취업장려수당 사업 편성 부적정 및 예비비 편성 요건 미충족,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 부진 및 보건복지부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중복,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성과미흡,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효과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산재보험기금 출연사업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 반납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기관 분석에서는 국토해양부 사업 중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사업대상자 조사 미흡, 상수도 공

급 관련 사업의 시설 중복 및 과잉투자, 수계 치수 사업 토지매입비 과다 전용,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사업의 지방비 대응 투자 없는 국비 선집행, 국도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서 예산의 단계적 편성원칙 위반,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에서 사업기간 고려치 않은 예산 편성, 공장입지유도지구 진입도로 지원 및 준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 사업의 사업대상 선정 부적절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사업에서 사업대상에 대한 대출조건이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 분석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서 예산부족으로 일시 중단한 문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서 사업대상자 추계오류와 예산과다 편성, 여성사 전시관 사업의 전용철차 위반 및 목적외 사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의 연례적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7~10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총괄, I ~ III

- 발간일 : 2011년 7월 25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07-8 93350
978-89-6073-461-6 93350
978-89-6073-462-3 93350
978-89-6073-463-0 93350



결산분석시리즈 제7권부터 제10권까지 총 4권으로 구성된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8개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2010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재정수입’, ‘재

정운용 성과’, ‘재정집행 적정성’, ‘재정 건전성·투명성’, 및 ‘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정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회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80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

(증액, 감액)하였는데,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금액의 84.5%인 4,385억원을 다시 감액하고, 국회가 감액한 금액의 212.9%인 1,345억원을 오히려 증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간(2007~2010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 24개 부처에 158개 존재하며 동 사업들의 2010년 예산 집행률은 59.7%에 불과하다.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의 경우도 총 49개 사업에 8조 9,31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유사·중복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회가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합 또는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2007년 30건, 2008년 34건, 2009년 34건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

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예산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사례,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 부적절한 이·전용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재정운용 성과측면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일관된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R&D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성과 저하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산분석시리즈 11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발간일 : 2011년 7월 27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69-2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29개 중앙관서, 195개 사업, 7조 4,208억원 규모의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성인지 결산서

형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별도의 통합서류가 아닌 국가결산보고서와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각각의 부속서류로 제출되었

으며, 국가재정운용이나 국가정책 전반에서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성별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부족한 주요 사업의 2010년 지출액은 2조 9,830억원 규모이며, 이는 2010년 성인지 대상사업의 총 지출액(7조 4,208억원)의 40.2%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성별 수혜 분석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미흡하게 수행함에 따라, 2조 1,174억원 규모의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7개 부처의 평가 기준 및 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총괄 부처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분류체계 및 성과목표를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설정하지 못하여, 보육지원 사업이 2010년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무엇을 달성했는지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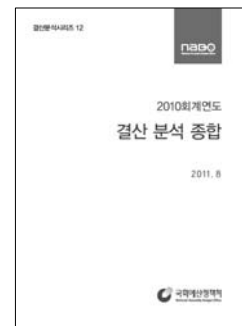
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선정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으로 통계청의 통계전문교육 지원사업, 국토해양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지식경제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등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 및 자격요건이 남성 중심으로 운용되어 여성 수혜 비중이 낮으나 집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사업,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디딤돌 일자리 창출 등은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여성에게 편중 지원된 사업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성인지 결산서가 갖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인지 결산서 양식의 보완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12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1년 8월 5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70-8 93350



동 보고서는 제1부 총량 분석, 제2부 중점 분석, 제3부 부처별 분석, 제4부 유형별 분석, 제5부 시정·제도개선 제안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제1부 총량 분석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서에서 주로 다뤘던 2010회계연도 결산 개요 및 재정운용의 특징,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제2부 중점 분석에서는 ‘회계별·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 분석’,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기금 재무 분석’, ‘공공기관 부채 분석’, ‘국민건강보험 재정위험과 입법과제’, ‘의무지출 결산 분석’ 등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다뤘던 38개 주제에 대해서 결산 현황과 주요 쟁점, 시정·제도개선 사항 및 예산연계 사항을 2~3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3부 부처별 분석에서는 ‘항공유도무기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위반’,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분야 일자리 집행 편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자체 부담 가중’, ‘상수도공급 관련 사업의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문제’ 등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요 개별사업 관련 369개의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결산 현황과 주요 쟁점, 시정·제도개선 사항 및 예산연계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4부 유형별 분석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검토한 489개 사업을 필요성·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중복,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 총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별 사업의 예산·결산 현황과 쟁점 사항을 표시하였다.

제5부 시정·제도개선 제안에서는 국회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총 377건의 주제에 대한 문제점 및 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1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 발간일: 2011년 10월 26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492-0 93350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위원회의 재정사업을 분석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중 시민단체 소통과 나눔 박람회사업의 경우 사업확대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등에 편성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정부위원회 소관 사업 중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타 부처와의 사업 중복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사업 중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사업으로는 산은금융지주 및 기업은행 지분매각은 매각의 불확실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경우 과도하게 증액된 정책자문사업 및 국제기구 공동건설팅사업의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복권기금의 홍보관축비는 복권판매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여 홍보관련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 발간일 : 2011년 10월 26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93-7 93350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는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분석 및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0개 부처에 편성된 개

별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결산심사와 예산심사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에서는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사업, 재외국민 선거 준비 사업,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북한정세지수 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2012년

에 신규로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기존 외교안보연구원 시설 활용, 교육생과 교수의 정원 및 보수 지급 수준의 적정 검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위원회 소관에서는 향토방위 군무원 인건비, 간부확보 장학 사업, 연구활동 지원 사업, 제주해군기지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에 1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연구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과제간 중복, 수의계약 과다, 연구자 편중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1,327억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의 경우 2011년도 건설 예산의 이월가능성을 고려하여 2012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서는 지역공동체 일

자리 사업, 범죄수사 역량강화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공직선거관리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에 5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타 부처와 차별화·특성화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중 우려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규로 2,71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의 경우 과다 계상된 일부 선거경비 예산의 조정 필요성, 1,462억원이 편성된 대통령 선거관리 사업의 경우 적절한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분야에 편성된 개별 사업 분석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한 총괄분석, 재정지출 흐름도, 결산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수록하고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3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 발간일 : 2011년 10월 26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94-4 93350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은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주요 현안분석 및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개별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다. 특히 신규사

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결산심사와 예산안심사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학술원 기본경비, 교직원단체파트너십형성기반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안은 기본적인 지원 절차 및 지급체계 외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2년 1월에 법인화되는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3,434억원이 편성된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 포함된 글로벌 프로젝트 예산에 대하여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조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2,100억원이 편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정주요건 조성 계획이 과도하며, 중이온 가속기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서는 한류진흥,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 문화재보수정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

류진흥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부담금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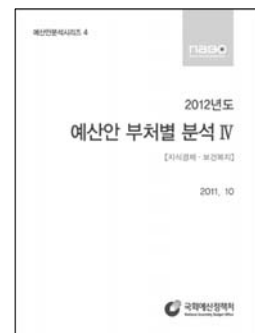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에서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해외농업개발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편성된 1,500억원은 지원규모가 실질적으로는 정부 설명보다 작으며, 지원방식 및 지원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쌀값의 상승 가능성과 지급대상 면적의 감소에 따른 예산 과다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편성된 개별 사업 분석과 함께 각 분야에 대한 총괄분석, 재정지출 흐름도,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도 수록하고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4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 발간일 : 2011년 10월 26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 978-89-6073-495-1 93350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는 지식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2012년 재정사업을 분석하였다.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연구개발비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중견 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비중을 상향조정하고 대기업 출연금 지원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재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은 기획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기사 지원 비중이 높고,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에게 오해 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글로벌 청년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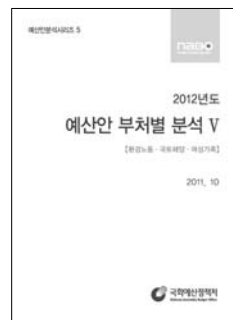
활성화사업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에 대한 교육은 창업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목적과 무관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수행하는 국비 보조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중 의사상자 지원사업은 최근의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목적의 예산은 공사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

- 발간일: 2011년 10월 26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496-8 93350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 보고서는 환경노동, 국토해양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예산안·기금안의 특징 및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확

충 사업의 집행 부진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폐기물자원화 사업의 계획 부실 문제를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대하여는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존재, 보험료 추가부담에 따른 가입유인 미흡, 법적근거 미비 등

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설계의 적정성 여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취업지원금 지원의 필요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포괄적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필요성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사업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경관도로조성사업과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의 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중복 여부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의 적절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6

2012년도 예산안 총괄

- 발간일: 2011년 11월 1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502-6 93350



예산분석실은 10월 26일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시작으로 11월 7일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까지 총 11권의 예산안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12년 예산안 분석은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2011년 예산안 분석보다 크게 발전하였다. 2011년 예산안 분석에서는 총 151개 재정사업을 분석하였으나, 2012년에는 526개의 재정사업을 분석하여 분석대상 사업은 3.5배 증가하였다.

「2012년도 예산안 총괄」은 이 시리즈의 제6권으로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기조, 국가채무, 정부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의 특징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총괄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먼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총수입과 총지출 규모, 기금별 수지, 예산총칙안 및 예산안 첨부서류 등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중앙관서별 세입 예·결산 현황 및 정부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전망치와의 비교 등을 수록하고 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안을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사업과 재량지출 성격의 재정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의무지출 규모, 총지출의 전체 구성 및 총지출 증가액의 의무·재량지출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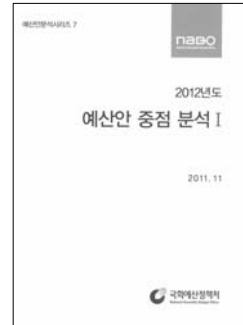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및 중앙관
서별 재원배분 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하여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의 최근 추이와 전망 및 국

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정부 전망의 실현가
능성 등을 분석하고, 국가채무 이외의 재정
부담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규모
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하고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7~9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 ~ III

- 발간일: 2011년 11월 1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503-3 93350
978-89-6073-504-0 93350
978-89-6073-505-7 93350



예산안분석시리즈 제7권부터 제9권까지
총 3권으로 발간된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은 주요 재정 현안과 국책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입사업 등에 대한 총 33개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중점 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2012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17.0%에 달하
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지
분 매각 여부가 불투명하며, 토지매각대 및
벌금·과태료 예산안도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예산안 반
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결산 심
의 결과 국회가 예산을 감축하라는 시정요구
를 했는데도 69개 사업에서 1조 9천억원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이 증가
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예산사업은 38개 사업
으로 예산안 규모는 7,985억원에 달하였다.

R&D 예산안의 경우 15조 9,725억원으로
금년보다 7.3% 증가하였는데 R&D 투자규
모의 확충 외에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SOC 예산안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3%(1.8조원) 감소하였으나, 4대강 사업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할 경우
22.2조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1.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각 연구기관 시설비 증가율
(19.0%)이 주요사업비 증가율(9.0%)의 두 배

에 달하는 등 연구능력 확충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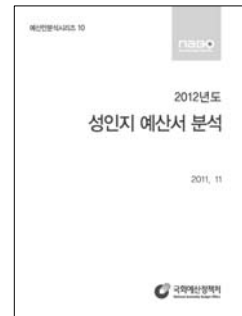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나, 취약계층 및 응급의료,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재원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였으며, 18.7조원에 달하는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은 녹색성장 사업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10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발간일: 2011년 11월 7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507-1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예산안 첨부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34개 중앙관서, 254개 사업, 10조 7,042억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고,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합리성이 부족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49개 부·처·청 중 34개 기관만 부처의 성 평등 목표를 작성할 뿐, 나머지 15개 기관은 부처의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제외

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별 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17개 사업, 3조 4,747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 규모 10조 7,042억원의 32.5%이고,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21개 사업 2조 2,890억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 및 통계가 부적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254개 사업 중 9.8%에 해당하는 25개 사업이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이나 통계가 부적절하였으며, 지적받은 25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조 4,095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규모 10조 7,042억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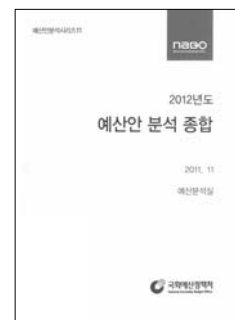
22.5% 수준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 평등 목표-성별분석-성과목표가 연계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사업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2년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5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일부 사업은 2012년까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11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발간일: 2011년 11월 7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506-4 93350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은 앞서 발간된 총괄, 중점분석 및 부처별 분석 등 예산안 분석시리즈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아울러 예산안 분석결과 도출된 세출조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리한 종합보고서이다. 동 보고서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총량분석에서는 예산안 개요, 분야별 재원배분 상의 특징 및 재정건전성 등 예산안 총괄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제2부 중점분석에서는 중점분석 보고서에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는 재정전반에 걸친 33개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있다.

제3부 부처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별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별로 분류하여 핵심 위주로 정리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부 유형별 분석에서는 예산안 분석을 통하여 검토한 사업 중 526여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필요성·공익성 결여, 사업의 유사·중복 등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제5부 재정사업의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287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중 예산안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13개, 감액이 필요한 사업 7개를 제시하고 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 중 예산안의 증액 조정이 필

요한 사업은 3개, 감액이 필요한 264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2010~2014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 발간일: 2011년 1월 17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 ISBN: 978-89-6073-424-1 93350



동 보고서는 2011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8권의 주제로 분석한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국제회의 및 포럼 등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제교류 강화 및 대외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으로 최초 발간한 것이다.

영문판 발간에 앞서 경제분석실은 2010년 11월에 「2011년도 예산안」 및 중기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국회의 심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발간되던 경제전망, 세수추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등의 보고서를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 시리즈로 체계화하여 발간하였다.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를 필두로 「2011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

「2010년 세계개편안 분석」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중기 재정계획인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 최초로 제출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분석이 신규로 이루어졌다.

동 영문판에서는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 시리즈의 핵심적 내용인 중기 경제전망, 총수입, 총지출, 재정건정성 전망 및 평가, 「201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번역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한국의 경제 및 재정상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발간일 : 2011년 4월 2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 ISBN : 978-89-6073-440-1 93350



동 보고서는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4월에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상반기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2011년도 1/4분기까지의 경제 상황, 2010년 재정운용 실적 및 세제개편 내용, 2011년도 확정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5년까지의 경제 및 재정 전망과 이에 기초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담고 있다.

주요 분석 결과,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4%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당초 행정부 계획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0년 경상 GDP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세입 여건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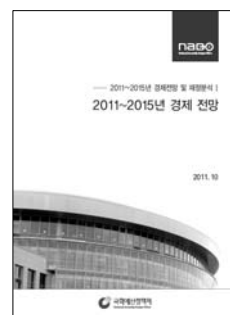
적극적인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총지출은 의무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2011~2015년간 재량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인 3.1% 증가)하더라도 2015년도까지 연평균 5%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2015년 관리대상수지는 11.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시한 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 이내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총지출 관리와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 보증채무, 건강보험 재정 등 재정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제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조세지출 축소 등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1~2015년 경제 전망

- 발간일 : 2011년 10월 19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 ISBN : 978-89-6073-482-1 93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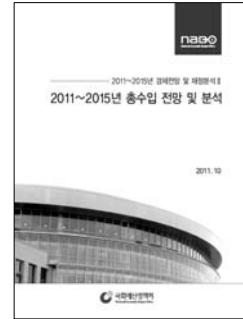
2012년 중 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1년(3.8%예상)보다 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하반기 이후 둔화추세를 보인 국내경제는 2012년까지 하강국면을 보인 후 2013년부터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설비투자 회복 및 고용증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고, 개도국의 내수확대정책(중산층의 소득증대효과 등)으로 해외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1~2015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로 지난 4월 전망치(4.2%)보다 0.4%p 하향조정 하였으며, 정부전망치(4.5%)보다는 0.7%p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12년 중 경성성장률은 6.7%로 2011년 보다 0.1%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행정부 전망치(7.6%)보다는 0.9%p 낮은 수준이다. 2012년 민간소비는 2011년(2.9%)보다 0.2%p 낮은 2.7%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용증가세와 임금상승률 둔화로 임금소득 증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점, 금융비용 부담 증가 및 가계부채조정으로 가계의 유동성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점, 금융비용 부

담 증가 및 가계부채조정으로 가계의 유동성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점, 역자산 효과 등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활성화정책, 재건축 재개발의 진전,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예상되나 SOC투자의 축소에 따라 0.6% 감소함으로써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2년 설비투자는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IT부문 수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면서 관련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2.9%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2012년 중 통관수출증가율은 10.4%로 2011년(21.5%)보다 11.1%p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입증가율은 11.7%로 2011년(24.8%)보다 13.1%p 낮아질 전망이다. 2012년 취업자 수는 경기둔화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 감소, 가계소비 부진과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관련 산업 및 서비스업 고용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1.1%(26.2만 여명) 증가가 예상된다. 2012년 GDP디플레이터는 수입물가상승의 영향으로 내수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3.2%로 상승할 전망이다. 2011~2015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7%에 이를 전망이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 발간일 : 2011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 ISBN : 978-89-6073-483-8 93350



「2011~2015 총수입 전망 및 분석」은 국회의 행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독자적으로 국세수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 등도 세분화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총수입을 전망하고, 행정부의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 총수입 전망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로 2012년 실질성장률을 4.5%, 경상성장률을 7.6%로 예상하였으나, NABO는 본 보고서에서 2011년 하반기 중 남유럽 재정위기 영향의 여파로 인하여 전세계 실물경제 회복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2012년 실질성장률을 3.5%, 경상성장률을 6.6%로 전망하였다.

2011년 총수입은 2010년 대비 8.4% 증가한 324.7조원으로 전망되었고 2011~2015년 중 총수입은 평균 경상성장률(6.7%)을 소폭 하회하는 연평균 6.1%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1년 국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취업자 수 및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187.6조원으로 예상되었다. 2012년 국세수입

은 205.5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고용 둔화로 인한 소득 증가세 둔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2011~2015년 중 국세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하여 동 기간 중 평균 경상성장률인 6.7%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년 사회보장기여금은 기준소득의 증가(2010년 임금상승률 6.8%)와 취업자 증가 추세(2011년 1.6%)로 인해 전년대비 9.8% 증가한 39.0조원으로 전망되었다. 2012년 사회보장기여금은 41.3조원으로 2011년 전망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11년 임금상승률이 5.3%로 둔화되고 2012년 취업자 증가율도 1.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2015년 기간 중 사회보장기여금은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년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출자기관 당기순이익 증가 및 배당률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9.6% 증가한 57.5조원(GDP 대비 4.6%)으로 전망되었다. 2011~2015년 중 중앙정부 세외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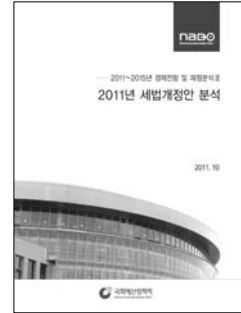
한 증가세는 과거(과거 5년 평균증가율 7.7%)에 비해서 둔화되는 것이다. 이는 이자

수입이 재정유자 잔액 감소로 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 발간일: 2011년 10월 28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 ISBN: 978-89-6073-484-5 93350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총평과 이에 따른 세수효과 및 주요쟁점을 정리하였다.

행정부의 세법개정안 정책방향은 대체로 대내외적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만 개별 정책수단의 통일성, 효과성, 적합성 등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장에서 분배, 투자 중심에서 고용친화로의 정부 정책기조 전환은 바람직하나, 충분한 재평가 논의 없이 일몰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를 상쇄하였다.

NABO 추계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2~2015년의 세수효과는 총 8.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철회(+11.9조원)와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조원) 등으로 증가한 세수가,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6.2조원), 신용카드소득공제(-3.6조원),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4.2조원) 등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행정부는 32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재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일몰을 연장하였다.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던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증가는 3.4조원(2013년 귀속기준)인데 비해, -6.7조원의 비과세·감면은 단순 연장하고 단지 10개 항목(0.3조원)만을 예정대로 일몰종료하는 데 그쳤다.

공제율 6%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효공제율 4.8%(행정부 3% 추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의 고용확대 효과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확대라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4%)을 낮추고 추가공제율(2%)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편법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단순하여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과세베이스도 주식 가치 증가분이 아니라 증여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어 편법증여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업상속세부담 완화는 가업 승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제한도(최고 500억원)도 지나치게 높아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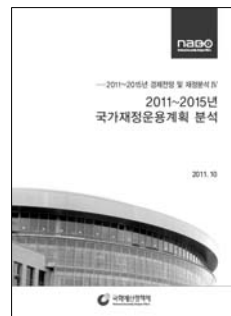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로 무자녀가구(71만

가구)를 포함하여 76만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나, 저소득층의 취업유인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종금융상품 및 국내발행외화표시채권 과세는 일부 금융상품에서나마 과세기반을 확대(세수증가 0.1조원)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본격적인 금융과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자본시장 성숙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해 금융서비스(총 수수료 24조원) 부가가치세 과세,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투기자본거래(40조원) 금융거래세(토빈세)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발간일: 2011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 ISBN: 978-89-6073-485-2 93350



본 보고서는 행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인 경제 및 재정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덧붙여서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 국가보충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3.5%, 2011~2015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8%로 전망하여 정부의 2012~2015년 경제성장률 4.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연평균 총수입 증가치는 6.1%로 정부 전망치(7.2%)보다 낮게 나타났고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3%로 나타나 정부 전망치(4.8%)보다 높게 나타나 재정 흑자폭이 정부 전망치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

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6.1조원 적자에서 2015년 6.7조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부 전망처럼 동 기간 동안 관리대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11년 33.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3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2012년에 세계적인 경기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12년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침체기로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기조절 기능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

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에서는,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분석 결과, 국가보증채무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전망 근거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가 있으며, 채무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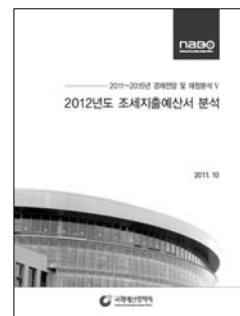
셋째, “2011~2015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분석에서는, 전년도 기금재정관리계획의 평가 등 의무 작성 사항에 대해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연금성 기금에 대해서는 현행 5년이 아닌 30년 이상의 장기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발간일: 2011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 ISBN: 978-89-6073-486-9 93350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1년 조세지출 규모는 30.6조원,

2012년 32.0조원이고 국세감면율은 각각 13.7%, 13.4%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조세지출규모는 27.7조원, 2012년 29.2조원이고 국세감면율은 각각 12.6%, 12.4%로 전망되어 행정부의 수치보다 작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고, 보다 세분화된 납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정누락 항목의 추계 등 추계방법을 개선한 데 기인한다. 우선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2년 국세감면율은 세법개정이전의 11.2%에서 12.4%로 상승한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효세율의 차이가 큰 경우, 과표구간을 구분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추계해야 오차가 작는데 행정부의 수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재추계한 결과 행정부 추계의 오차율은 22~5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공란이거나 누락된 4개 항목(약 2,113억원)을 추계하였다.

행정부의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예산정책처(2010.11)의 「2011년도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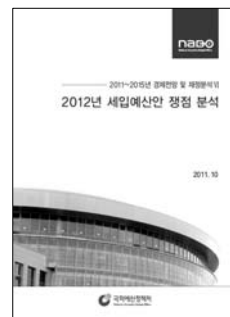
지출예산서 분석」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우선 조세지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이외의 개별세법 중 조세지출항목이라고 판단 가능한 항목은 비망항목(31개)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특별한 설명없이 누락되었던 항목 중 17개를 포함하였고, 2010년 일몰정비내역과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일몰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추정공란’이었던 항목이 상당수 줄어들었고(2011년 177개의 9%인 16개 → 2012년 201개의 4%인 8개), 새로 추가된 항목 30개 중에서도 추계가 곤란한 9개 항목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2012년도 행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는 2011~2012년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내용이 부족한데, 이는 일몰항목 평가를 위한 법적 요건이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평가서 및 조세지출 추계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 발간일 : 2011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세제분석팀
- ISBN : 978-89-6073-487-6 93350



동 보고서는 국회의 2012년 예산안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 “2012~2015년 중기 총수입 예산”, “2011년 세법개정안” 및 “조세지출예산” 등 세입관련 예산안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30여개의 세입예산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201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1,245억원 과소추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수효과 5,070억원 과대추계 등 세제개편 세수효과 반영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목별 세수추계방식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2012년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불투명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부동산매각 차질 우려 등으로 관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특히, 동 보고서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세외수입 예산안에 계상된 정부 보유지분매각대 2.3조원의 세입차질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2012~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에서는 중기 총수입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중기 경제·재정전망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3년 재정균형 조기달성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데 대한 근거로서 2013년 국세수입 전망의 과대, 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의 차질 등을 제시하였다.

201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세법개정 세수효과에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세수효과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정부발표 세수효과에 대한 내적 정합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감면률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종합

- 발간일: 2011년 11월 11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 ISBN: 978-89-6073-481-4 93350

동 보고서는 기 발간한 「2011~2015년 경제전망」,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분석」 등 6권의 핵심 분석결과를 종합하



여 가독성 및 예산안 심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간하였다.

종합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경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동시적 침체에 따른 세계교역량 둔화, 고용 및 투자 부진,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2012년도에 3.5%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2년 정부의 4.5% 전망에 비해 1%p 낮은 수준이고, 2015년까지 증기적으로도 정부(연평균 4.5%)에 비해 0.7%p 낮은 연평균 3.8%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2년의 총수입은 예산안(344.1조원)에 비해 0.8조원 낮은 343.3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도 예산안”과의 차이는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로 인한 국세수입 0.5조원, 자산 매각 가능성 등으로 세외수입에서 0.3조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2013년 총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한 측면이 있다. 총지출은 2012년에 예산안(326.1조원)에 비해 0.2조원 낮은 325.9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전망은 재량지출을 소비자물가수준(실질가치 동결)으

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며, 정부의 연평균 4.8% 총지출 증가는 더 강한 지출 억제를 계획한 것이다. 한편, 2012년 관리대상수지는 15조원 적자로 전망하였으며,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2015년에도 흑자로 전환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가채무는 2011년 419.3조원, GDP 대비 33.5%에서 2015년 513.3조원, GDP 대비 33.5% 수준으로 전망한다.

2012년의 재정운용은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1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임을 전제로 하였을 때, 2012년 예산안은 긴축기조를 나타내어 경기 동행적(pro-cyclical) 재정운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수단의 통일성·효과성·적합성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9호)

- 발간일: 2011년 2월 28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2010년 국세수입(총국세)은 177조 7,184억 원으로 2009년 실적 164조 5,407억원 대비 13.2조원(8.0%) 증가하였고, 2010년 예산 170조 4,575억원 대비 7.2조원(4.3%) 증가하였다. 2010년 국세수입이 호조세를 보인 원인은 강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입 및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부가가치세·교통에너지환경세·관세가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국세수입 실적은 예산·전망 대비 급증하였지만, 국세부담률과 국세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세수입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개편 이전인 2007~2008년 수준에 비해서는 경상GDP 성장률 대비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 2011년의 경우, 실질경제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소비·소득·투자 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양호한 국세수입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의 세출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행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를 위해 1/4분기에 예산의 43%가 배정되는 등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졌다. 2010회계연

도의 당초 예산액은 255.4조원인데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2.7조원 및 예비비지출결정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259.1조원이며, 이 중 총세출은 248.7조원이 이루어져 예산현액 259.1조원 중 96.0%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행률 96.0%는 최근 5년간 수치에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말에 집행된 사업들이 이월된 경우가 다소 많았던 데에 기인한 것이다.

2010년에 총 7.8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9년의 6.5조원에 비해 1.3조원 증가(20%)한 것이다.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공적기금출연과 채무상환에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금액만 사용되었고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되어 왔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세계잉여금을 공적기금상환 및 채무상환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는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시기의 문제를 국회의 재정통제권의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0호)

- 발간일: 2011년 6월 27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어 오던 소득불평등도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6~2009년 사이 0.331에서 0.345로 상승하였으나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한 2010년도에는 0.341로 하락하였다.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10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3.7%로 크게 하락한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 2010년의 소득증가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주요 소득 구성요소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2010년간 소득1~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8.6~5.6%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득6~10분위 가구의 경우 -2.8~1.1%로 하락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완화를 이끈 것이 근로소득 증가율의 변화였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금융위기에도 불구

하고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지 않은 주요 원인은 기업구조 조정이나 중소기업의 대규모 부도사태 등이 수반되지 않아 대량 실적이 없었다는 점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시행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9년 부도업체의 수는 1,998개에 머물러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고용률 또한 금융위기 기간 1.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09~2010년의 평균 실업률이 3.4%로서 외환위기 당시의 절반 수준인데 비해 직접적 일자리 창출 예산의 GDP 비중은 다소 늘어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대에 기여한 효과가 그만큼 더 컸다. 그러나 소득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 된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영세자영업의 포화 상태 등 구조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1호)

- 발간일: 2011년 8월 26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일자리창출지연, 가계의 부채조정 지속, 경기부양효과 약화 등으로 상반기 중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7월 하순 이후 지속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하반기 중 선진국 경제 성장세를 더욱 위축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조기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반복되면서 선진국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진국의 경기수축으로 국내

경제도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진국 경기수축으로 국내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업종의 설비투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 중 44.5%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의 수출환경 악화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설비투자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설비투자 위축은

고용사정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으로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설비투자 위축, 고용증가세 약화, 자산가격 하락, 가계의 부채조정 본격화 등으로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시 위축으로 하강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2호)

- 발간일: 2011년 11월 17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2011년 중 전년대비 3.8%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경제는 세계교역량의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주택시장 부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2012년 3.5%로 둔화될 전망이며, 2012~2015년의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8%로 예상된다.

총수입은 2011년 중 내수회복에 따라 8.4% 증가한 324.7조원을 기록하겠지만, 2012년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둔화 영향으로 5.7% 증가에 그친 343.7조원으로 예상되며, 중기 2011~201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5년 411.8조원으로 전망된다.

2011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대내외적 경제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달성, 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한 과세의 적합성, 고용창출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등에서 미흡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총지출이 2011~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5.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부의 동기간 총지출 증가율 4.8%보다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재정운용은 세계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경제 및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여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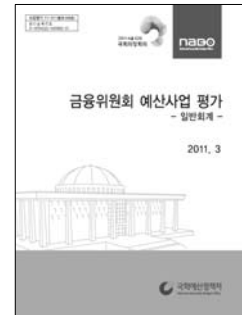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재정기조를 다시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거시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바람직한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 판단된다.

사업평가 11-01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평가—일반회계

- 발간일: 2011년 3월 31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29-6 93350



본 보고서는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사업(2011년도 주요사업비 793억원)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저조 및 저조우려 사업, 예산액 조정 및 법규 제·개정 필요 사업,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등의 문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운영방식 미흡, 예산집행을 저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업무분담 미흡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저조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정책지원” 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은 내용이 금융교육에만 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보호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발진” 사업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금융수요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산의 특수성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FIU 운영” 사업은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성과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일부 사업의 경우 타 부처사업과의 중복성, 수요예측 미비, 예산중액사유와 맞지 않는 사업계획 설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 “금융정책지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의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경제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민·관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 “금융중심지 조성발진” 내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녹색 금융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요구된다.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사업과 목적 및 성격이 유사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통합 및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일부 사업은 관련 법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성과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 금융감독 결과보고서(가칭)”의 작성 및 국회제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지원” 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 상에 중장기 금융교육 전략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화를 명시하여 금융교육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부정수급자 처벌규정 신설, 저축한도액 및 저축기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자료출처의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성과목표치가 예산액의 추이 및 예년 실적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 등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이 있어 대안적 성과지표 및 적정 수준의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금융정책지원” 사업은 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지수개발이 필요하며,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내의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은 결과지향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어민 여부 심사기준 완화유인이 있으므로 완화유인이 없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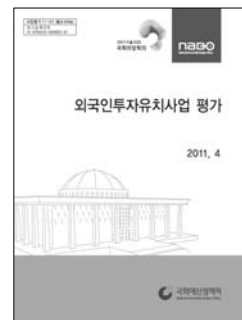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

- 발간일: 2011년 4월 19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39-5 93350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과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선도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과 외

국인투자유치사업, 조세감면, 비재정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유치현황과 재정지원의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국



내에 도착한 금액이 최근 5년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자본회수액을 감안한 순외국인직접투자액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실적이 크게 저조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1994년 이후 1조 74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사업 중 부지매입과 임대료지원과 같은 입지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입주율이 낮고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낮으며, 입주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연구개발수행수준 등이 낮아 재정지원 효과가 미흡하였다.

사업평가 11-0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 발간일 : 2011년 5월 2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41-8 9335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에서는 2009년 6월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복지재정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성과를 평가하였다.

2011년 예산 중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규모는 총 86.4조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27.9%에 이르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 복지 만족도는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의 일환인 법인세 감면액은 재정사업비보다 규모가 크며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족하였다. 외국인투자관련 사업 및 정책은 여전히 양적 성과지표에 집착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하므로,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에서는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액과 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급여의 지급·관리 및 소득·자산 조사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의 실효성 미흡, 사회복지담당 인력 배치의 부적절성, 민간복지자원의 동원 및 복지정책 과정에의 주민참여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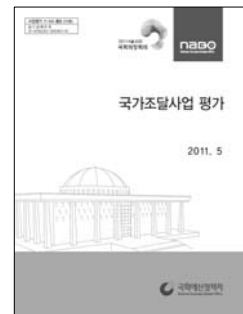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부서

의 업무분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직의 사회복지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우선 채용 등의 방안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회복지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 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1-04

국가조달사업 평가

- 발간일: 2011년 5월 18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43-2 93350



조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조달사업의 규모는 2009년도 한해에 68조 8,900억원, 2010년도에 52조 5,797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시장 규모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그리고 원자재비축 사업에 있어서의 정책 운영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조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국가시책의 효과적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국가조달사업이 갖는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조달사업 수행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국가조달사업의 핵심기능별 주요 사업을 점검한 후 국가 정책적으로 잘되고 있는 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해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지는 취지에서 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가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비율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지역별 구매비율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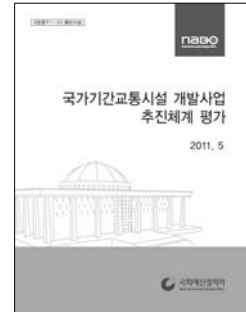
공사에서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각 비축원자재 품목별로 비축목표재고량 대비 부족분을 파악해 원활한 수급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비축원자재에 대한 수익률을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조달기관 간 조달통계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사업평가 11-0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 발간일: 2011년 5월 26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45-6 93350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동 사업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계획수립, 예비타당성조사, 공사발주 및 사후평가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성과목표도 불명확하게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교통DB를 사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발주청 책임 하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입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건설공사 낙찰률이 상향되고 있었으며,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턴키설계심의위원 선정방식을 제정·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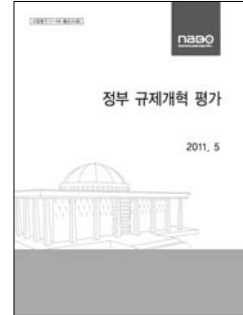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성 위주의 일률적인 타당성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연 문제 해결, 객관적인 턴키설계심의 방식 도입, 설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1-06

정부 규제개혁 평가

- 발간일: 2011년 5월 31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42-5 93350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이를 정비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출발은 불량하고 질 낮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때문에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에는 비용과 편익을 철저히 검토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규제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와 “규제일몰제” 확대·적용 조치를 평가하였다.

먼저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경우, 설문 조사와 일부 과제의 실적 자료를 토대로 성과를 점검한 결과,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을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규제개혁의 큰

틀에서 부작용이 없는 규제유예 과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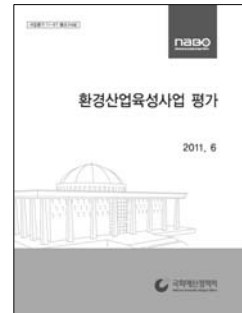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부 규제 영향분석서 평가결과, 이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에 인한 비용, 편익 등의 분석 수준의 획기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규제영향분석서 검토와 평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 일몰제의 경우, 일몰제의 확대·적용 이후에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실제 일몰 적용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 내실화가 어려운 이유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효력상실행 일몰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평가 11-07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 발간일 : 2011년 6월 23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52-4 93350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따라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 진입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환경부도 2011년도에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 400억원, 환경기술개발 사업 2,061억원 등 총 2,719억원의 재정을 환경산업육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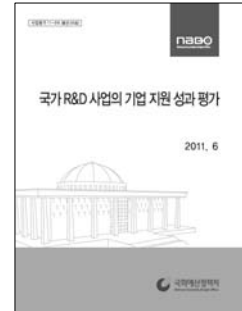
그런데 환경부가 2001~2010년 동안 총 8,226억원을 투입하여 수행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타 부처 R&D사업과 중복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평가보고서는 환경산업육성사업 중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과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정 투입 규모에 상응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 자료의 축적이 미비하고,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측정방법은 실제 산정방식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등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최종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등 연구개발 과제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고, 여타 사업 및 제도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환경산업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경시설 공사의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

- 발간일 : 2011년 6월 2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53-1 93350



동 보고서에서는 2006~2009년 기간 중 국가 R&D 사업을 통해 1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연평균 1,392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1,268개)의 동 기간 특허출원 232,718건(국가 R&D 특허출원 15,822건 포함)과 동 기업의 연도별 과거 3년간 특허출원 756,745건을 분석하여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기업의 국가 R&D 특허출원 성과와 기업 자체 R&D 특허출원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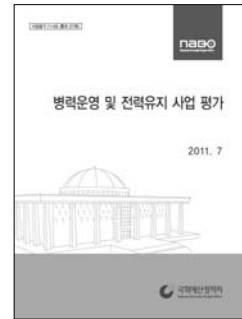
평가 결과, 기업의 자체 R&D 성과와 국가 R&D 사업을 통한 성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의 성과도 기업 자체 성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경우, 대기업이 과거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고 현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 국가 R&D 사업과 대기업 자체 R&D 간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성과가 이전에 다른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성과가 없던 중소기업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새롭게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경우 보다 적게 나타나,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업에 대한 국가 R&D 사업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국가 R&D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1-09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 발간일 : 2011년 7월 2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64-7 93350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에서는 국방부 소관 병력운영 부문 및 전력유지 부문 사업들의 예산 낭비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사업평가는 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가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사업(병력운영 부문과 전력유지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결과 국방부의 군 의료수준 제고 미흡, 군인복지기금 사업 수혜 형평성, 피복류 만족도 개선 미흡, 개인 과병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 인건비 미사용액 과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의무 발전을 위해 한 해 약 1,650억원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오히려 증가하여 국방부 부담금액은 2006년 274억원에서 2010년 33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군인복지기금 수입 기여도는 병사와 간부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복지기금의 지출은 간부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체력

단련장은 작전 및 훈련, 보급수송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 현역군인 비율이 20% 미만이라 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체력단련장에서 면세유류를 사용함으로써 4년간(2007~2010년) 약 15억원의 세금을 적게 부담하였다.

셋째, 최근 3년간(2008~2010년) 군인·군무원 인건비의 미사용액이 2,01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초급간부 및 부사관 지원을 감소, 하사 정원 증가로 예산편성인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방부가 지난 8년간 연구개발을 위해 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신형전투화 보급사업은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임의로 군요구성능(ROC)을 하향조정하고,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신형전투화의 뒷굽이 분리되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11개 전투화 제조회사 중 5개 제조사가 납품한 38,787켤레(2010년 총 42만 3,745켤레 중 9.1%)가 불량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국적군 및 PKO 개인과병(2011.7 현재 총

53명)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국방부는 해외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활동 임무수행을 위해 재외무관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무관부 운영과 관련한 2011년도 현지인력 고용 인건비는 총 2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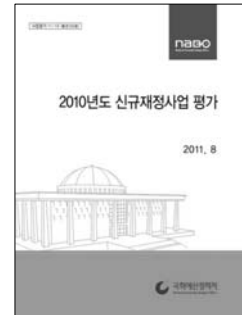
9,000만원인데 국방부 재외공관 무관에 대해서만 행정원, 운전원, 조리원 등 현지 고용인력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택기지이전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업평가 11-10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 발간일: 2011년 8월 8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71-5 93350



2010년도에 정부가 새로이 착수한 신규재정사업은 459개로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2조 5,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예산규모로 볼 때는 총지출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정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을 평가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평가보고서는 34개 부처 459개 신규재정사업 가운데 21개 부처 67개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집행현황, 총사업비 변경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관련 법령·지침·규정·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사업방향재검토 및 재원조달계획의 확보 여

부 등을 평가하였다.

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절차의 사전 준비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미비하거나 예산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2010년도에 시작된 신규사업임에도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이는 예산확보를 의식해 총사업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본계획 등이

미비한 사업도 다수 파악되었다.

한마디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성이 미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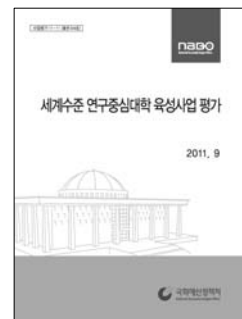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2012년도 신규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평가 11-1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 발간일: 2011년 9월 5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75-3 93350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 및 연구능력 제고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BK21사업”을 시작하여 대학 연구력 제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12년까지 총 8,25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으며 2010년 현재까지 4,73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노벨상급의 우수한 해외학자 영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을 제고한다는 취지 하에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새로운 전공·학과 개설을 지원하는 1유형, 개별학자 초빙을 지원하는 2유형, 세계적 수준의 석학 초빙을 지원하는 3유형).

그간 동 사업에 대하여 해외학자의 국내 체류기간 미충족 문제, 해외학자의 질적 수준 미흡에 대한 지적은 있어 왔으나 사업 전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는 미흡했던바, 동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집행 및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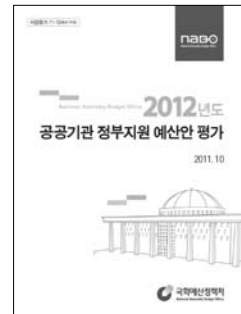
하였다.

평가 결과,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준비 과정의 부실,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의 문제점이,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적절성 및 신뢰성 미흡, 해외학자의 연구 역량 및 우수성에 대한 평가 항목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평가기준 및 배점 비중 부적절, 사업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사업비 삭감 위주의 평가로 인한 부작용 등이 문제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논문 및 특허 실적, 학생 충원을 등의 사업성과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평가 11-12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 발간일 : 2011년 10월 2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 ISBN : 978-89-6073-497-5 933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 9월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284개이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재정융자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는 36조 9,183억

향후 동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사업단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이 있는 소수정예 대학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유형별 효과성 및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유형의 사업 위주로 사업유형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목적 달성 방법으로써 해외학자 영입을 필수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으로 2011년 35조 690억원보다 1조 8,493억원 증가하였고, 2012년 정부 총지출 326.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달한다.

정부 예산안이 부처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부처별 예산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이 풍부하

다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을 심의할 때 예산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는 2012년도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의 25.7%에 해당하는 63개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9조 4,741억원의 예산사업 성과와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공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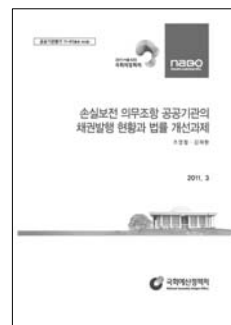
관의 재무 및 여유재원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 관련 정부 수입안, 공공기관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안 동시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공공기관평가 11-01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 발간일 : 2011년 3월 2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 ISBN : 978-89-6073-407-4 93350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에는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전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손실보전 임의조항이 아니라 “보전한다”는 손실보전 의무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201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손실보전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보증채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국가의 간접적인 보증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2010년 현재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규모는 국가보증채의 6.8배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나 일반적인 공기업 부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공사채 수요증가로 인해 발행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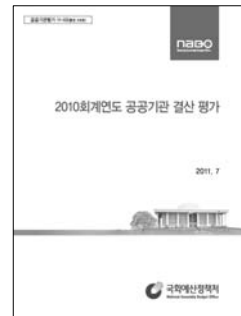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

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도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평가 11-02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발간일: 2011년 7월 11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 ISBN: 978-89-6073-459-3 93350



2011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286개의 공공기관은 법령에 규정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재정융자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은 32.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309조원의 10.4%에 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0년 386.6조원으로 국가채무 392.8조원 대비 98.4%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외에 부담금 수입과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결산 심사가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양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이번에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정부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위탁 및 독점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공공기관의 재무 안정성과 지속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동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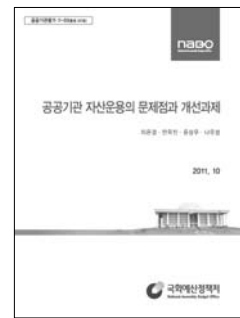
채의 범위 설정과 관리의 문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와 우발채무 규모,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필요성 등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된 총체적 분석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PF 사업 투자의 문제점,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공공기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과다

문제, 일부 공공기관의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 계상 문제, 국립대학병원 정부지원 예산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증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평가 11-03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발간일 : 2010년 10월 6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 ISBN : 978-89-6073-480-7 933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 9월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284개이며, 2010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총 자산 규모는 654조 원으로 2008년 대비 142조원이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정상적인 기관 운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자산, 장기적인 투자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하는 투자자산,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실은 미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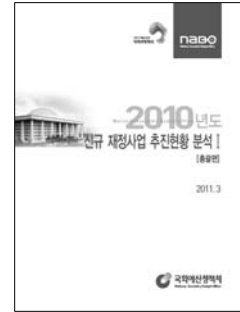
따라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자산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자산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관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투자수익을 목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금성 기금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한국투자공사의 여유자산 운용 수익률 현황 및 운용체계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자산운용 부적정 사례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 —총괄편

- 발간일 : 2011년 3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35-7 93350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이해할 때, 전 부처에 걸쳐 매년 약 500개 정도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는 비교적 적은 459개의 사업이 예산에 추가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0년도 기준으로 약 2조 5,600억원이 배정되어 총지출의 1% 내외로 그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규 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단순한 금액 비중을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신규 재정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그 편성·심의 등과 관련하여 일관된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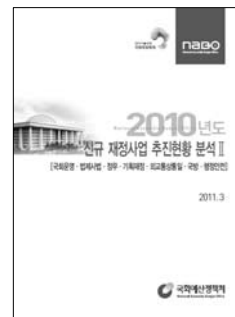
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또한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사업 착수의 신중성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보고서는 신규 재정사업의 연도별, 재원별, 위원회별, 분야별, 부처별 및 사업시행 방식별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또한 개별 신규 재정사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예산·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

- 발간일 : 2011년 3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36-4 93350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국회와 대통령실을 보면,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각각 “대변인실 활동지원” 등 3개 사업과 “G-20 경호” 사업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사업은 그 예산 집행률이 100% 또는 94% 이상인 반면 국회의 “한국 의정연구회지원” 사업은 75.6%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법무부가 5개, 감사원3개, 그리고 대법원에 2개가 있다.

법무부는 “기업법제 선진화”사업만 98.8%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은 모두 100%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1별관 신축공사”사업이 74.7%, “ASOSAI 사무처 운영 및 세미나 개최” 사업이 6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의 경우에도 “사법형사업무 전산화” 사업이 70%,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청사 신축”

사업이 52.7%의 집행률을 보임으로써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관 중 국무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사업 등 5개가 편성되어 있는바, “세종시기획단 운영” 사업만 83.6%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85%를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1개가 편성되어 84%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8개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녹색금융” 사업이 66%, “업무용부동산 취득” 사업이 3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을 뿐 “자산매각비” 사업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사업은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3개의 사업 중 가장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6·25전쟁 60주년” 사업이 92.5%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보면, 기획재정부에 17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출소자 기능 취득 전문 처우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37%의 집행률을 기록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중 외교통상부에

는 10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그중에서 “신아시아 외교 추진” 사업이 81.2%를 기록함으로써 가장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대체로 무난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부에 편성된 13개의 사업도 대체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탈북자방북자국제기구 등 심층정보 수집” 사업과 “하나원 분원 신축” 사업이 각각 69.7%와 62.4%의 집행으로 부진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관의 국방부에는 12개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1군지사 이전” 사업 등 5개의 사업이 집행률 0%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극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도 24개의 사업 중 “정부전용기” 사업 등 5개의 사업이 1%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전술함대지유도탄” 사업 등 3개의 사업은 0%를 나타내고 있는바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행정안전부에는 16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대체로 무난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공원 조성” 사업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19.4%와 4.44%에 불과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등 2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약 98%의 양호한 집행실적을 기록하였다. 소방방재청에는 3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개최” 사업은 97.5%, 나머지 사업은 모두 100%의 집행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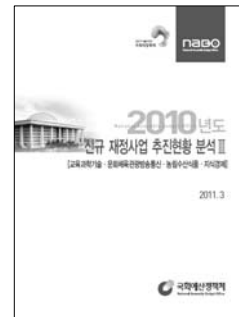
- 발간일 : 2011년 3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37-1 93350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I」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교육과학기술부를 보면,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교

원양성기관평가 강화”,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한시지원” 사업 등 33개(관련예산 총액 : 1,488억 2,100만원)의 사업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사업은 그 예산 집행률이 100% 또는 90% 이상인 반면에,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수행” 사업은 86%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그리고 “부산과학관 건



립” 사업의 2010년도 예산액은 15억원으로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학관 운영비 지자체 분담 비율의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38개(2,816억 7,2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 12개(439억 1,300만원), 그리고 문화재청에 4개(57억 8,800만원)의 신규사업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 지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되었고,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지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사업은 50% 이상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어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심사지원”, “시청점유율조사”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30.7%, 54.4%로 저조하였으며, 문화재청의 “항새마을조성” 사업은 78.6%의 집행률을 보였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을 보면,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22개(2083억 1,600만원), 농촌진흥청 3개(346억 3,700만원), 산림청에 1개(38억 8,500만원)의

사업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류피해지역 지원”, “해조류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의 이월률이 30%를 넘었으며,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육성”,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이월률이 각각 63.1%, 86.7%나 되어 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시설원예시험장이전” 사업의 집행률이 41%에 그쳤고, 산림청의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사업은 81.8%의 집행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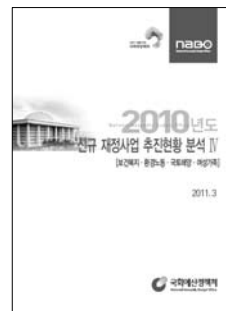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을 보면, 지식경제부에 40개(2,357억 6,300만원), 중소기업청에 4개(160억 700만원)의 신규사업이 있다.

지식경제부는 “가스냉방보급확대지원” 사업(집행률 66.4%),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운영” 사업(집행률 83.5%),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집행률 90.5%)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100% 또는 98%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립” 사업의 집행률이 41.4%로 저조하였다.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V

- 발간일: 2011년 3월 30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38-8 93350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V」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지원”, “질병관리본부 청사이전비” 사업 등 29개(예산액 총액 : 2,871억 100만원)의 사업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 사업 등 6개(356억 8,100만원)의 신규사업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집행률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집행률 25%), “신종전염병 신속대응 조기경보망 구축”(7%), “의과학지식센터 건립”(0.3%), “신종전염병 국가격리 시설 건립”(14.5%)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서울병원현대화지원” 사업은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해외 식품공인 검사기관 활성화” 사업은 62%, “서울청 종합민원센터 증축” 사업은 41.8%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환경부가 14개(1,450억 2,800만원), 고용노동부 13개(686억 7,200만원), 그리고 기상청에 2개(56억원)의 신규사업이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청 청사신축”(집행률 54.8%),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48%),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57.9%) 사업등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35.4%에 그쳤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상황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향후 정확한 사전 예측과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기상청의 2개 신규사업은 거의 전액이 집행되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을 보면,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97개(3,378억 7,50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3개의 사업(74억 6,400만원)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설악-청평 국도” 사업 등 일부 국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전액 이월된 사업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신덕-임실 국지도건설” 사업 등 몇몇 국지도 건설사업도 신규공사의 연말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되었다. 이러한 예산 집행 부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확보” 사업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고,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도 집행률이 14.8%에 그쳤다.

반면에 “장흥해당 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예산액이 15억원인데 반해 41억 이상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처럼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사업도 소수 존재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3-1 생활권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은 민간공동주택 착수 지연으로 전액 불용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을 보면, 여성가족부에 10개(771억 8,800만원)의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지만 “국제협력여성단체지원” 사업이 71.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이 44.9%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 ~IV

- 발간일 : 2011년 7월 25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 ISBN : 978-89-6073-465-4 93350
 978-89-6073-466-1 93350
 978-89-6073-467-8 93350
 978-89-6073-468-5 93350



성과보고서는 예산집행 과정, 성과달성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보고서는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체계 및 내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정부의 성과보고서가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성과 중심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더라도 투입된 예산 규모에 비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의 성과 저조 원인을 분

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정부의 성과보고서 상으로는 평가대상 47개 기관의 전체 5,410개의 성과 지표 중 82.7%인 4,477개 지표에서 당초 목표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과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 중 목표 달성이 수월한 부분만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투입되는 예산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전년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성과보고서에 담겨야 할 기본적인 성과정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한, 현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대상에서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

성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관리과제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 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 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모든 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합시켜 하나의 성과관리 제도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I ~IV

- 발간일 : 2011년 10월 2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 ISBN : 978-89-6073-488-3 93350
978-89-6073-489-0 93350
978-89-6073-490-6 93350
978-89-6073-491-3 93350



최근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정부성과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을 평가해 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그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

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성과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예산안심의 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

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대표성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 중점분석 및 총괄평가

- 발간일: 2011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 ISBN: 978-89-6073-500-2 93350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성과관리 현황, 외국의 최근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등 성과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또한, 2010년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에 성과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점 분석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분석하였더니, 전년도에 성과실적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달성하기 용이한 성과지표로 변경하거나, 성과목표치를 하향조정하거나, 성과실적 누락을 지적받고도 추가적인 실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국가의 지원 약속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10% 감액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사업심층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심층평가의 결과를 성과목표관리제도에 환류 시키고,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심층평가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안이 적시에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총괄평가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함께,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및 성과달성이 불확실하거나,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사업, 성과관리·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업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 중 전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16.4% 및 10.8%였다.

둘째, 2012년도 성과계획서 분석결과, 성과계획서에 의한 예산심의의 불가능성, 효율성지표 및 정량지표의 부족, 기관 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과대성과목표치 달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자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총사업비 변경 과다사업이 분석되었으며, 세입 과소계상 문제 및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넷째,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사업, 성과측정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이 지적되었다.

다섯째,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등이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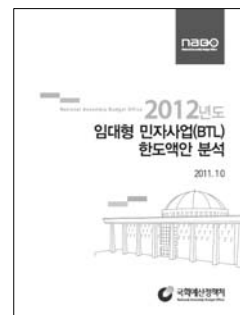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국가재정법」의 개정, 「국회법」에 성과계획서에 대한 시정요구권 마련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발간일 : 2011년 10월 26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498-2 93350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

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BTL 한도액안은 4,944억원(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시 9,444억원)이



다. 그간 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제도화하고, 기 추진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추계서를 BTL 한도액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BTL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향후 재정부담 규모, 사업의 지급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조사 자료 등 BTL사업심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BTL사업 한도액안 의결 등 국회 심의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 추진된 BTL사업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 심의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과 “2011~2015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도 BTL 한도액안 만큼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예측되는 정부지급금 규모는 약 2조 1,901억원이다. 대상시설별 한도액안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계량화하는 노력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민자적격성에 대한 검증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2015년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대한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는 2005년부터 기 추진된 BTL사업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을 3조 6,67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정부지급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는 등 일부 산출 근거를 조정할 경우 총 정부지급금은 9조 7,11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22조 5,960억원,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할 경우 약 46조 9,89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0조 8,786억원)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 발간일: 2011년 10월 31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ISBN: 978-89-6073-499-9 93350



국회는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을 유도하고, 중요한 재정과제로 대두된 재정건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시 주요 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부담을 분석

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향후 5년간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며,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정부담 규모와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약 4.7조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의 사업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각 부처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개별 사업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개별 부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성과계획을 연계하지 않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성과정보의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2012년 조세지출 규모는 9조 1,130억원으로, 이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지출 15조 2,446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24조 3,576억원의 약 37.4%에 해당하므로 재정운용 및 관리에 있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안 · 예산정책 · 연구 보고서

예산현안분석 제39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상 쟁점

- 발간일 : 2011년 2월 28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집필 : 변재연
- ISBN : 978-89-6073-428-9 93350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경제사업계획이 적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예산상의 쟁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족자본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협중앙회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007년도와 2010년도 경제사업계획서를 비교하였다. 투자 총액은 6조원과 6조 20억 원으로서 거의 동일하나, 2007년도 계획에는 5조 2천억원을 소비지 부문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으나, 2010년도 계획에서는 1조 9천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산지, 물류, 식품 및 사료 자재 부문은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되었다. 지표연도와 성과목표가 동일한 상황에서 투자 세부내역이 크게 변동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경제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경분리 이후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과거 경제사업실적 및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 규모와 비교하였다. 농협 경제사업물량의 2001~2009년 9년간 연평균증가율 5.4%와 신경분리 이후 2012~2020년의 연평균증가율 11.8%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부문 생산액 대비 농협의 경제사업 물량 비중을 보면, 2008년, 2009년 각각 33.7%, 35.1%였으나, 신경분리 이후 2015년과 2020년 각각 109.0%, 145.8%를 계획하고 있어 농업부문 생산액을 초과할 계획인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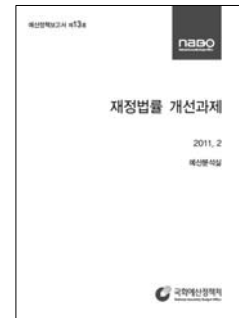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배분 내역을 분류한 결과, 총 투자액 6조 20억원 중 시설분야 투자비율이 70.3%(4조 2,170억원)로 '시설의 규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제사업 활성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가 총지출 대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농협지원에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족자본금 조달에 있어 농협 자체조달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산정책보고서 제13호 재정법률 개선과제

- 발간일: 2011년 2월 23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 ISBN: 978-89-6073-496-5 93350



「재정법률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및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법률에 대해 23개 개선과제를 발굴·정리한 보고서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장·관·항’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세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국회 심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과 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재정법」은 총액계상사업 세부 집행실적 및 세부시행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 등 재정정보의 국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재정정보의 자료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등 재정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반면 동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규정하여 통행료 징수 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문간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부과 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사후적인 결산 성격이므로 국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연도에 부과할 부담금 규모 및 요

을 등에 관한 전망치를 보여주는 사전적인 부

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예산정책보고서 제14호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 발간일: 2011년 4월 13일
- 발간부서: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 1팀
- 집필진: 재정소요점검 TF
- ISBN: 978-89-6073-434-0 93350



본 보고서는 2010년 발간했던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우리나라 국회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간하였다.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미국 의회의 재정소요점검제도를 살펴보고, 지식경제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재정소요점검 예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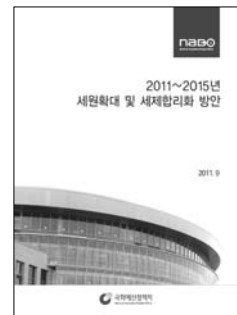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 국회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비용추계(신규법에 의한 재정소요 파악)와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기준선 전망(기준법에 의한 재정소요)이 재정소요점

검을 위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연구결과로서, 위원회별·부처별 재정소요점검표, 수정안·대안의 재정수반요인 변동내역, 예산안의 국회심의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정소요점검제도를 국회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부에는 이 연구를 위하여 수집·생산한 재정소요점검표 등의 세부 내역자료를 담았다.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 발간일: 2011년 9월 3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세수추계팀
- 집필진: 최천규, 김대철, 강민지, 성명기, 신영임, 장윤정
- ISBN: 978-89-6073-476-0 93350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부합하는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재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총수입전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중기 세제개편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도 계획성 없이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방안을 1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할 뿐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목적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매년 수많은 항목 변화로 인해 복잡해진 세제의 내용을 납세자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NABO는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중기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2011~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17개 축소·폐지 및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비과세·감면항목에 대해 목적의 타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실효성, 한시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몰도래 41개(7.4조원) 항목 중 11개(1.9조원)와 2012년 일몰도래 77개(9.2조원) 항목 중 6개(2.3조원)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세원확대 방향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모색, 이자소득세율 인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서비스 규모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하되,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세 폐지를 폐지하고, 최근의 낮은 개인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자소득세율을 14%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세부담 형평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OECD국가와 같이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개편하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과표양성화로 인한 과도기적 제도 유지 필요성 감소에 따라 폐지하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제점 인상이 바람직하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자격 소득상한액(1,700만원)의 인상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NABO가 제안한 세원확대 및 세원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13년 이후 약 3.3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세원확대 방안인 비과세·감면 정비(4.2조원)와 중기 세원확대 방안(0.3조원)을 통해 4.5조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세제합리화 방안을 통해 1.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 발간일: 2011년 12월 27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 집필진: 김우철, 강민지
- ISBN: 978-89-6073-512-5 93350



본 보고서는 국세청 100분위 자료를 기초로, 비모수 추정법을 활용하여 2009년 우리나라의 복합조세함수(근로소득세)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을 세부담의 귀착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소득세의 사실상 면세점(평균세율 0.5% 미달)이 총급여 2000만원(전체 근로소득자 상위 47%)으로 지나치게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4000만원 근로소득자(상위 21%)의 평균세율은 2%에 불과하여, 소득이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되는 소득 1000만 원당 평균세율 상승은 1%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하는 형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공제에 따른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저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오르고, 고소득구간에서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sqrt{\quad}$ 형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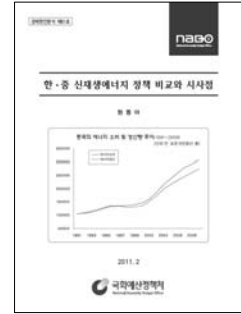
하는 2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이후부터 4000만원 중반까지의 소득구간에서는 평균세율 절감효과 상승(반전효과)하고, 4000만원 중반 이후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공제의 평균세율 하락폭이 일정하여, 소득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감면효과가 줄어들지 않는(고정효과)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세액공제·감면은 대체적으로 역S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 저소득 구간을 제외하고는 소득 상승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공제의 감면효과와 뚜렷이 구별된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소득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감면으로 인한 유효세율 하락폭은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의 모습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sqrt{\quad}$ 형의 상대적 감면효과를 보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역U자형의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원칙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감면효과 절대적인 크기가 작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현안분석 제61호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 발간일 : 2011년 2월 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 집필 : 원동아
- ISBN : 978-89-6073-425-8 93350



최근 세계 각국은 온난화에 의한 기후 영향으로 곳곳에서 홍수 또는 폭설 등에 의한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와 직결된 에너지정책은 지구촌 환경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10% 가까운 고도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생태계과파,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수립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부문 육성 및 원자력 발전의 가속화 등 에너지구조 변화를 통한 환경개선과 에너지확보의 다양화를 꾀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

는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더불어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에너지관련 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모색은 향후 성장잠재성이 높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세제지원, 금융적 지원, 행정간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경제현안분석 제62호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분석

- 발간일 : 2011년 6월 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 집필진 : 박승준, 이강구
- ISBN : 978-89-6073-447-0 93350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은 두 가지 기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재정지출과 수입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경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제외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경로이다. 본 보고서는 첫 번째 기제인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규모를 추정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는 경기불황이나 호황기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화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재량적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의사결정과정의 생략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내부시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경기 하강기에는 확장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긴축적으로 작동하여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자동안정화장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전에 비해 경제위기 발생 후에 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적 충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가 보다 크게 작동한 것을 의미한다. 자동안정화장치로 인해 1998년 외환위기 시 경기충격의 18%를 완화시켰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

기 시에는 경기충격의 24%를 완화시켰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외환위기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동안정화장치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는 향후 저소득계층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세의 경우, 경기불황기에 일시적으로 과거 2~3개 과세연도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최근 국제기구(IMF)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적 재량정책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동적 재량정책은 자동안정화장치 이외에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현재 상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향후 경기변동과 연계하여 임시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적 지출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확장실업수당제도(Extended Benefits Program)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간일 : 2011년 8월 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 집필 : 윤준승
- ISBN : 978-89-6073-479-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통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재정통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 재정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전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한 정책판단은 국민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확성은 재정통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10회계연도의 결산 관련 재정통계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부의 통계작성 기준이 내적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는지 여부와 정부의 기준이 국제기준이 정하고 있는 바와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정부는 유가증권(물납주식) 매각수입을 용자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규모를 과소계상하였다. 정부가 2010년 결산에서 용자회수로 처리한 유가증권매각대 1,309억원

은 공공정책적 목적 등을 위해 매입한 주식 이 아니라, 세금을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합재정 범위 밖에서 안으로 금전이 유입되는 경우, 외부거래로서 통합재정수입 통계에 포함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내부거래로 분류하여 통합재정 통계에서 제외 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금융성기금에 대해 지출하는 거래를 외부거래로 분류하면서,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이 금융성기금에 대해 지급받는 거래를 내부거래로 분류하고 있어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에 관한 지침 제정,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 재정통계 관련 인력의 증원 및 전문가 참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 발간일: 2011년 8월 8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 집필: 신동진
- ISBN: 978-89-6073-449-4 93350



남북한 통일비용추계는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독일 통일비용의 경험에 근거한 기존 남북한 통일비용 추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소득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지출액개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북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은 미래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함하면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기존 통일비용 선행연구들에서는 비용편차가 최소 5백억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 크게 나타나 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였다.

동독주민의 1인당 GDP는 1991년 서독수준의 33%에서 2007년 67%로 두 배정도 증가하였고, 동독노동자의 생산성도 1991년 서독수준의 42%에서 2007년 77%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매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된 소득지출은 서독 GDP의 4~5%이며, 동독 GDP의 약 30%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의 소득지출이전이 동독 GDP의 약 30% 규모로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목적의 공공지출이 모두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대부분의 통일비용 선행연구들은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09년 북한의 국민총소득(28.6조원)은 남한 국민총소득(1,068.6조원) 대비 2.6%로 발표되고 있는데, 독일 통일비용처럼 ‘남한 국민총소득 대비 5%’로 매년 이전지출 되는 것으로 추계한 통일비용 53.4조원은 북한 전체 경제규모의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한다. 통일 후 동독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규모의 통일비용 투입을 20년 동안 매년 북한경제가 모두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계된 통일비용은 북한경제의 흡수능력을 감안할 때,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추계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는 추계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이 통일 이전에 자생적으로 경제력을 강화시켜 소득수준을 지금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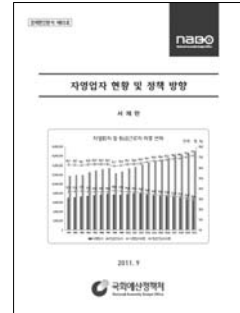
향상시키도록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남북한의

분단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현안분석 제65호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 발간일: 2011년 9월 27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 집필: 서재만
- ISBN: 978-89-6073-472-2 93350



본 보고서는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적 한계를 도출하고 자영업자 관련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림수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산업(非農 全産業)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91년 27.9%에서 2010년 24.5%(총 546만 6천명)로 감소하였다. 비농 전산업 자영업자 중 42.4%인 231만 8천명(2010년 기준)이 도매·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중 도매·소매업 종사자 비중은 1993년 43.2%에서 2010년 28.6%로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1993년 14.8%에서 2010년 13.8%로 감소하였다. 한편, 자영업 부문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20~30대 자영업자 비중은 22.9%로 1991년 50.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0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1991년 21.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자영업자 현황에 따른 특징을 도출한 결과, IMF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감소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컸으며, 특히 30~40대, 남성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기업체 파산 등으로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임금근로자가 1998년 한해 동안 110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었으며 재정을 통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임금근로자 감소를 억제하였다. 2003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자영업자의 감소속도가 금융위기 시기(2009년)에 빨라져 31만 9천명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0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 업종에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

이 월평균 매출 400만원 이하,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영업자 현황 하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이 자영업 진입 및 현 자영업 영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지원 정책은 디자인, 컨설

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신성장 업종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한계)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30대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자영업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완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경제현안분석 제66호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 발간일 : 2011년 11월 1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 집필 : 장인성
- ISBN : 978-89-6073-508-8 93350



통계청의 공식 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간의 괴리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소비자들의 소비지출구조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계조사 및 물가조사 자료를 세분류 수준에서 매칭시킨 후 소득분위별로 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소득분위별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지수간의 괴리의 주요 원인인지를 분석해보았다. 또한 체감물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생계비지수에 가장 가까운 물가지수인 피셔지수와 톱크비스트지수

등을 계산함으로써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식인 라스파이레스지수가 지닌 대체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1990년 1/4분기~2011년 2/4분기의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작성 결과 지난 21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의 물가상승률은 총 133.2%로서 상위 10% 가구의 125%에 비해 8.2%p 가량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각각 4.3%와 4.1%로서 그 차이는 0.2%p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균적인 물가상승률의 차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현상은 물가지수의 변동성이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물가상승기에 저소득층의 물가가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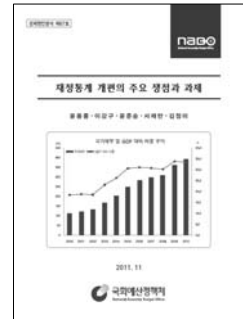
높게 상승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물가상승이 본격화된 지난 2010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소득10분위의 경우 2.8%인 데 비해 소득1분위의 물가상승률은 3.8%로서 1%p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동성은 저소득층의 소비평활화를 방해하여 효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이 중첩된 시기에는 생계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평균적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더 클 경우 자산이 부족한 저소득층으로서는 특히 체감물가와와의 괴리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등 물가지수에 연동된 저소득층 대상 급여의 책정 시 대표적 소비자물가지수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물가변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현안분석 제67호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발간일: 2011년 11월 18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 집필진: 윤용중, 이강구, 윤준승, 서재만, 김정미
- ISBN: 978-89-6073-479-1 93350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지난 10년 이상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번 “재정통계 개편”에서 통계 기준을 IMF의 2001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적용하고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시장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부 포괄 범위를 변경하여 새로운 재정통계 처리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금번 개편은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의 보완에 불과하며, 재정통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즉, 금

번 재정통계 개편 방안은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의 개편에 국한된 것으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 등의 재정통계는 변화가 없고 그동안 논쟁이 되어 온 국가채무의 포괄범위, 처리 방식, 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통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시한 국제기구 제출 통계의 개편

에서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3개 특별회계의 일반정부 범위 제외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며, 기관장의 임명, 예산, 우정재산 및 이익잉여금의 활용 등 자율성에 대해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준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3개의 특별회계 역시 정부 회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한다는 점에서 「GFSM 2001」 2.2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반정부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24개 민간관리기금에 대한 시장성테스트는 제도단위의 개념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금은 독자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고 거래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부채를 부담할 수도 없어 별도의 제도단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시장성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부기에 필요한 공통된 재정정보 공개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결산 재정통계의 일관성 문제,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현안분석 제68호

경제성장률 단기에측모형

— 베이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 발간일: 2010년 12월 13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 집필: 황종률
- ISBN: 978-89-6073-510-1 93350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변수라고 할 수 있는 실질국내총생산에 대한 단기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월별지표

를 이용한 분기별 실질GDP 예측 모형(분기최소자승모형)과 월별지표 예측모형(월간 베이저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결합한 연결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시차를 두고 이용 가능한 월간예측지표에 대한 베이지언 VAR모형과 분기모형이 결합되었으며,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반복적으로 새로운 예측치를 생성할 수 있는 간결한 모형을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예측 수행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해당 분기의 월별지표는 전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one-step ahead forecast), 해당 분기의 첫째 혹은 둘째 달의 월별 지표만을 부분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도 있으며('flash' estimate or 'nowcast'), 해당 분기의 모든 달에 대한 월별 지표가 이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수행자가 처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해당 분기의 첫째 달의 월별 지표만을 부분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점차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기의 모든 달에 대한 월별 지표가 이용 가능한 상황까지 변화시켰을 때 해당분기와 다음분기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생성되고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2001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월간지표와 2011년 2/4분기까지의 실질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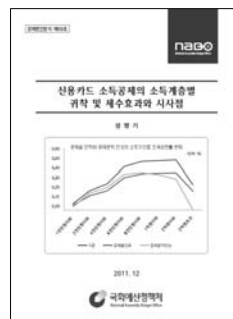
자료를 이용하여 월간예측지표에 대한 베이지언 VAR모형과 분기성장률예측모형을 추정하고 2011년 3/4분기와 4/4분기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생성한 결과, 단기예측모형이 비교적 정확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난 8월까지의 월간지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10월 초의 시점에서 예측한 3/4분기의 전년동분기대비 실질GDP성장률은 3.55%로 지난 10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속보치 3.4%와 12월 6일 발표한 잠정치 3.52%에 대단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언 추론의 장점은 모형의 모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충격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대칭적으로(symmetrically) 반영한 조건부 예측분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어진 정보 집합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예측분포가 생성되는 과정도 쉽게 볼 수 있었다. 200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모형을 추정 후 2011년 9월까지 매월 축차적으로 5기간의 예측시계를 두고 표본의 예측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BVAR모형이 VAR모형에 비해 훨씬 우월한 월간지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현안분석 제69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 발간일: 2011년 12월 16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 집필: 성명기
- ISBN: 978-89-6073-511-8 93350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1999년 8월말 시행되었으며, 일몰기한이 4차례 연장된 가운데, 2011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동 제도가 서민봉급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부도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조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서민보다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며 과세기반 양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따른 역할을 다하였다면 예정대로 일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본 보고서는 그간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존재 의의와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신용카드 이용액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 시 경제규모에

비하여 큰 편이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비하여 소득세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제도 존재의 의의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 동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유지에 따른 비용(조세감면액)대비 편익(세수 증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축소 시 공제문턱을 높이거나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조세지출 감소효과와 공평성 모두 공제를 인하방식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신용위험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데 가계 건전성을 위하여 직불카드 사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결재신용위험이 없는 현

금융수증의 경우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과 전통시장 등에서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공제율도 직불카드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신용

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2009년 현재 8,992억원으로 추계된데 반해 행정부는 1조 8,93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실제보다 과대추계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0호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 발간일: 2011년 8월 23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집필진: 제민
- ISBN: 978-89-6073-474-6 93350



소득수준의 향상, 식품위해물질의 증가, 농식품 수입의 확대 등으로 인해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 업무가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양한 인증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되어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반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증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부처별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 발간일: 2011년 9월 7일
- 발간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 집필진: 정유훈, 안대훈
- ISBN: 978-89-6073-477-7 93350



선진국형 항만체제의 도입으로 항만경쟁력 제고하고자 2004년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2011년 8월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는 등 4개의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들은 항만경쟁력 제고라는 설립취지인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 기보다는 단순 업무인 항만기반시설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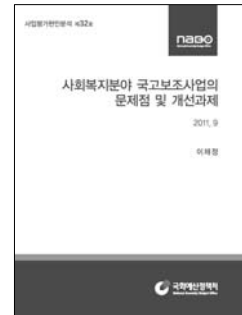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항만공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만공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항만공사의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항만공사가 설립 취지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만공사의 업무 및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물동량 및 선석을 증가시키기 위한 양적 확대정책보다 서비스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 경쟁 항만과의 경쟁의 격화가 예상되어 항만물동량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항만시설의 공급이 과도해질 경우 국내 항만 및 터미널운영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만시설의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발간일 : 2011년 9월 2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 집필 : 이채정
- ISBN : 978-89-6073-478-4 93350



최근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2002년 4조 5,277억원 → 2011년 14조 8,621억원)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분(2002년 1조 9,122억원 → 2011년 7조 1,062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지방비 부담분의 급속한 증가는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서울과 지방에 상이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비율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보조율 대비 10%p씩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이 당초 의도대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지방비 부담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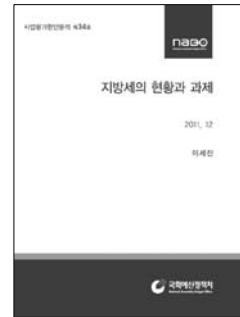
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비율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과 외국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보조율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4호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 발간일 : 2011년 12월 16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 ISBN : 978-89-6073-509-5 93350



최근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가운데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꾸준한 지방재정 지출권한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배분되는 재원의 규모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20%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과세권의 제약으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이후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잦은 부분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를 가지게 되어 과다한 납세·징세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지방세법」이 지난 2010년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법(分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16개의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규로 도입되는 등 지방세제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2011년 예산 기준 전체 지방 재정 수입의 35.3%)이 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광역시 지역으로의 확대 검토,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개선방안 마련, 주행분 자동차세 운영의 개선, 지방세지출예산서의 도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 이관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II.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요구사항의 조사·분석 업무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의하여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회답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된 일반 조사·분석 요구는 모두 736건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가. 2011년 처리 현황

[실·국별 조사·분석 회답 현황]		[정당 및 위원회 조사·분석 요구 현황]	
실·국	건수	정당 및 위원회	건수
예산분석실	296	교섭단체	한나라당 389
경제분석실	231		민 주 당 272
사업평가국	209	비교섭단체	70
합 계	736	위 원 회	5
		합 계	736

나. 최근 5년간 추이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 현황]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2010년 대비 증가율
439	653	1,114	1,028	736	3,970	-28.4%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회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조사·분석(의안비용추계 포함)과 관련하여, 의원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NALS :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Support)을 서비스하고 있다.

NALS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의원실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 구분된 지원기관의 단일 창구를 제공하여 의원실이 효율적으로 조사·분석을 요청하고 회답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정보요청]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경제 및 사업평가 관련 조사·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안비용추계요청]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자료요청 등록

자료요청을 등록하세요.

01 입법정보요청

02 법률안입안요청

03 의안비용추계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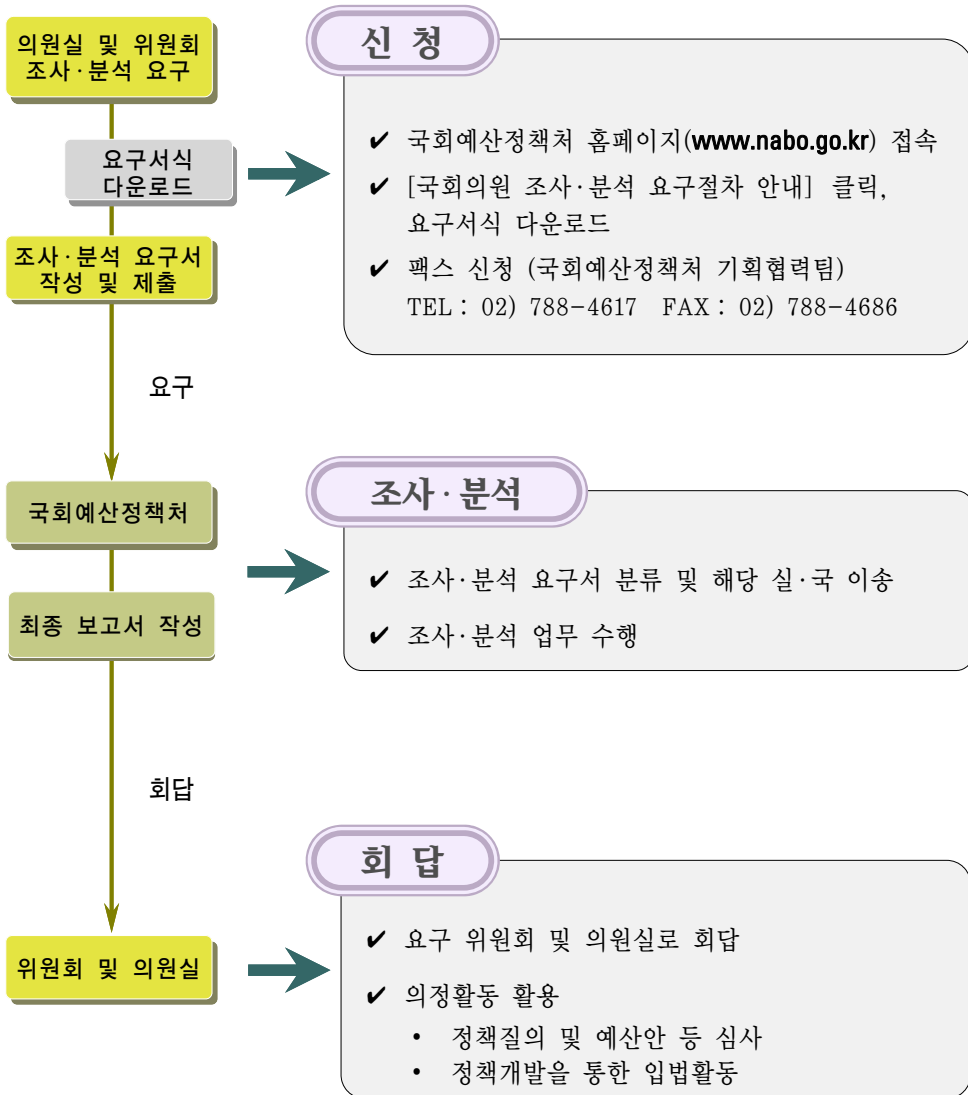
국회정보시스템 | 법률지시정보 | 예산안정보 | 국정감사정보 | 의안정보 | 회의록 | 인터넷의사중계 | 영상회의록 | 미디어자료관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Copyright © 대한민국국회 All rights reserved.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NALS) 이용 화면]

□ 요구서식을 이용하는 방법

요구서식을 이용하여 팩스로 신청하는 기존 방법도 가능하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법안비용추계 현황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국회법 제79조의2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추계서가 해당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안의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작성 주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팀 및 법안비용추계2팀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비용추계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추계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제공하고 있다.

준비된 법안의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려면 앞서 소개한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의안비용추계요구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788-4686)를 통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팀에 송부하면 된다.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출범 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부터 총 2,533건의 비용추계 의뢰를 받아 철회 처리된 339건을 제외한 2,194건을 회신하였다.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54건의 의뢰에 그쳤으나, 이후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54건의 의뢰가 접수되었다.

특히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2008년 5월 이후 2008년 말까지 접수된 비용추계 의뢰 건수가 4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477건이 접수되었고 414건의 비용추계서가 공식 회신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접수 및 회신 건수]

(단위 : 건)

		의뢰	철회	회신
제17대 국회	2004	54	0	54
	2005	184	39	145
	2006	184	45	139
	2007	166	23	143
	2008 (~5.29)	23	4	19
제18대 국회	2008 (5.30~)	421	38	383
	2009	508	66	442
	2010	516	61	455
	2011	477	63	414
합 계		2,533	339	2,194

주 : 1. 2011년 12월 31일 접수 기준

2. 법안비용추계 건수는 전체 추계 건수 중 세수추계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비중

2004년 이후 2011년 말까지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의원발의 법안은 4,669건(세수추계 제외)으로,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이 작성한 추계서는 26.6%에 해당하는 1,241건이다. 제17대 국회에는 그 비중이 23.3%였다. 제18대 국회에는 그 비중이 27.8%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한 의원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제고된 결과로 보인다. 2011년의 경우 962건의 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는 253건으로 26.3%이다.

[의원발의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계서 비율]

(단위: 건, %)

		전체 추계서	비용추계서(a)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 (b)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율 (b/a)
제17대 국회	2004	149	147	15	10.2
	2005	331	325	77	23.7
	2006	317	288	76	26.4
	2007	513	418	111	26.5
	2008 (~5.29)	57	49	7	14.3
	소계	1,367	1,227	286	23.3
제18대 국회	2008 (5.30~)	787	616	176	28.6
	2009	1,225	1,010	280	27.7
	2010	1,002	854	248	29.0
	2011	1,175	962	253	26.3
	소계	4,189	3,442	957	27.8
합 계		5,556	4,669	1,241	26.6

- 주: 1.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의원 발의법안을 분석.
 2. 비용추계서(a)의 값은 전체 추계서 중 세수 추계를 제외한 지출 추계만을 의미함.
 3.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b)의 첨부 건수는 의원발의 법안의 의사국 의안과 접수일자 기준.

라. 관련 보고서 발간

□ 법안비용추계 미첨부 요건 강화 방안

미첨부 3호 사유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첨부하게 되는데, 미첨부 3호 사유서가 첨부되면 해당 법안의 재정소요액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법의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미첨부 3호 사유서가 첨부된 의안이 많아지면 원래 비용추계 제도의 주요 기능인 정부의 재정계획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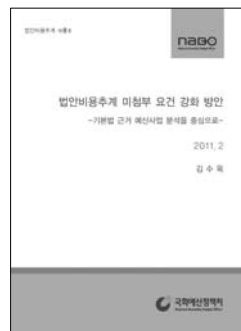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재정수반 법령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사업의 연계성 관점에서 재정수반법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3호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3호)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실제 예산사업에서 근거조항으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의 특성과 해당 사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비용추계 미첨부 3호 사유로 인용되고 있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비용추계 미첨부 3호 사유서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수반 법조항의 규정방식 개선과 비용추계 미첨부 3호 사유 개정 및 상임위 심사단계에서의 비용추계서 첨부 등을 제안하였다.

□ 2010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본 사례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에 의뢰받아 작성한 지출관련 비용추계 가운데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본 사례집은 국회의원 등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에게 비용추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황을 알리고자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률안의 비용추계를 담당하게 될 실무자에게 지침이 되게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정리하였다. 목차는 I. 법안비용추계 연혁, II. 국회 비용추계서 첨부현황, III. 국회예산처 비용추계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17대 국회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비용추계제도의 양적·질적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제2부에는 2010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추계서 중 내용 및 기법 면에서 우수했던 14건의 비용추계 사례를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다.

3.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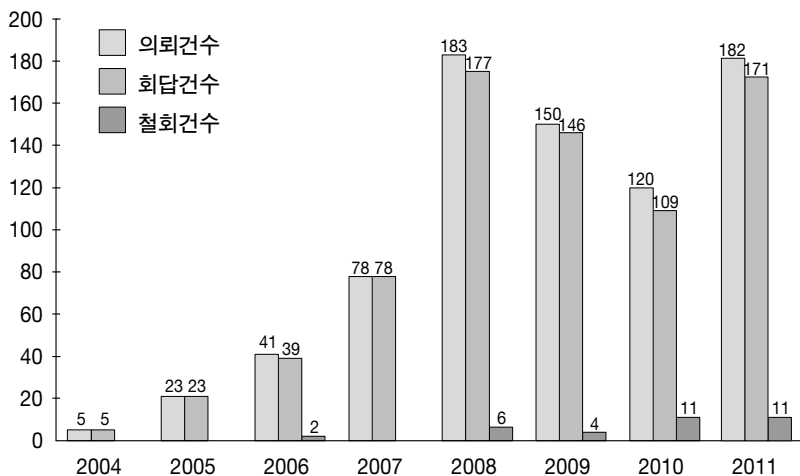
가. 의안비용 관련 세수변화 추계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과 관련된 의안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의안비용추계 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3건, 2006년에는 41건, 2007년에는 78건, 2008년에는 183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9년 150건에 이어 2010년에는 120건으로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다시 182건으로 반등함으로써 세법개정안 발의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 추계에 대한 높은 수요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안비용추계 의뢰 및 처리 추이]

(단위: 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의뢰건수	5	23	41	78	183	150	120	182	782
회답건수	5	23	39	78	177	146	109	171	748
철회건수	0	0	2	0	6	4	11	1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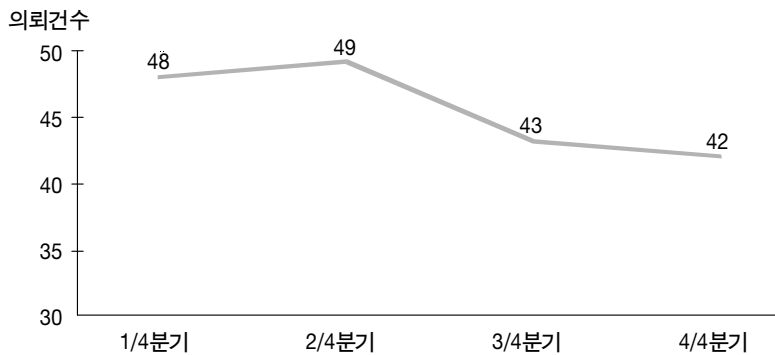


2011년도에는 1/4분기에 48건(28.4%)이 의뢰되어 다른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2/4 ~ 3/4분기에 각각 46건(27.2%)과 36건(21.3%)이 의뢰되었고, 4/4분기에는 39건(23.0%)이 의뢰되었다. 최근 2년간은 분기별로 거의 고르게 분포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안비용추계 요구가 다소 둔화되었다.

[2011년도 의안비용추계 분기별 접수 분포]

(단위: 건,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의뢰건수	48	49	43	42	182
(비율)	(26.4)	(26.9)	(23.6)	(23.1)	(100.0)



법안별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의뢰가 171건 중 8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22건(12.8%),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20건(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13건(7.6%),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9건(5.2%),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2건(1.1%)을 차지하였다. 또한 FTA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기타 법률 개정안이 24건(14.0%)을 차지하였다.

[법안 종류별 2011년도 의안비용추계 회답 현황]

(단위: 건, %)

	조특법	소득세	지방세	부가세	법인세	증부세	기타	합계
회답건수	81	22	20	13	9	2	24	171
(비율)	(47.3)	(12.8)	(11.6)	(7.6)	(5.2)	(1.1)	(14.0)	(100.0)

나. 관련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기존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본 연구보고서는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추계모형(2009. 11)을 세목별로 세분화하고,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존 모형과 비교하여 이번 모형에서는 여러 개선이 있었다. 첫째, 세목을 세분하여 추계하였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국세 14개 세목 중에서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10개 세목 중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로 합하여, 소득세 등 9개 세목을 추계하였었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13개 세목을 추계하였고, 세목에서도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등 8개로 세분하였으며, 법인세도 원천분과 신고분, 부가가치세도 국내분과 수입분 등으로 세분하여 전체 28개 세목으로 추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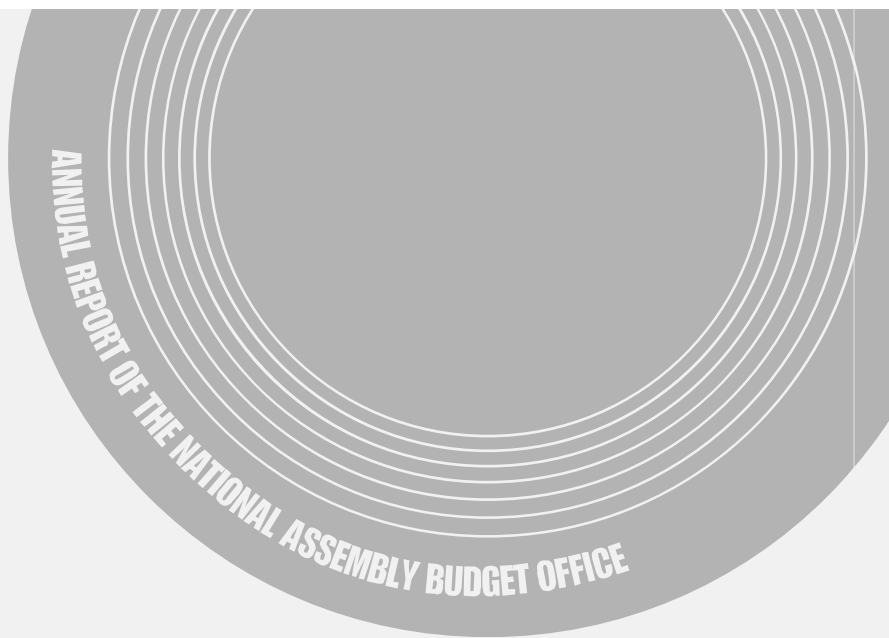
둘째, 모형구조를 적합성이 높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주로 경상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면서 일부 거시 변수들을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2009년 세수추계모형 설명변수들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셋째, 분석방법을 개선하였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대규모의 세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모형에서는 세법개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전망기간 중에 예정되어 있는 세법개정의 효과는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몇 세목에서 먼저 세원을 추정하고, 여기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세수추계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세수추계의 오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세수추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과 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III. 주요 사업 및 활동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예산안·결산·기금관련 토론회와 더불어 각종 예산정책현안에 대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가.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이하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국회의정관에서 개최하였다.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과정의 초기부터 국민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 형식을 탈피하여,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토론회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선정된 국민패널 20인이 참여하였고, 관련 협회, 기업인 등이 분과토론회에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부처 관료, 일반국민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였고, 6개 분과토론회에는 각계 각층에서 총 560여명이 참석하여, 재정운용과 주요 분야별 예산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전체 일정]

구 분	날 짜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장 소
대토론회	3. 28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분과 토론회	3. 29	복지 분과	농림·수산 분과	국회의정관 105호
	3. 30	지방재정 분과	경제산업 분과	
	3. 31	재정 분과	조세 분과	

(1)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3.28)

첫째 날인 3월 28일 왕상한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나라살림 대토론회의 국민과 대토론회는 20인의 국민패널을 비롯하여, 이종구 국회의원(한나라당), 장병완 국회의원(민주당),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단으로 참가하였고,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의 적정성, 효율적인 예산심의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정건전성에 대하여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하여 과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한 세입확충 필요성과 함께 지출 생산성 제고 및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세입확충 방안으로 이종구 의원은 소득세 조정을 통한 세입확충을, 장병완 의원은 감세정책 기초의 조정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제안하였다. 지출 생산성 제고 및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토론자가 공감하였으며 특히 복지지출의 누수방지 및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재원배분의 방향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재원배분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복지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병완 의원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 국민안전, R&D 및 교육 분야에 재원배분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효율적 예산심의 방안에 대하여는 결산심의를 조기에 실시하여 결산과 국정감사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를 연계하고 예산안 심의 전에 이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기간의 확대 필요성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과정의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행정부와 국회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함께 제시되었다.

한편,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응답률 84.2%)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응답률 76.2%)하고 있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관련 재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응답률 91.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과토론회

□ 복지 분과 (3.29 오전)

복지 분과 토론회는 “복지예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명순·김춘진·정하균·이한구·이용경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국회 관계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명순·김춘진·정하균 의원과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김원식 건국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류기정 한 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복지재정 규모의 적정성, 서민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방안(강명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원 부담가중 문제와 해결방향(김춘진 의원), 지자체 사회복지재원 부담가중 문제 해결방안(정하균 의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국가재정 부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복지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절대 빈곤층 지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대책이 필요

한 보육, 아동, 교육예산 확충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격급여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하지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 농림·수산 분과 (3.29 오후)

“농림·수산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농림·수산 분과 토론회에는 신성범·강봉균 의원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국회 관계자,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업계 관계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성범·강봉균 의원과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원 중앙대 교수,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농업 구조개선과 미래지향적 자원배분 방향,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축산업 부문 구조개선 방안,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관련 재정 집행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농업 구조개선과 자원배분 방향에 대하여는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급안정, 생산기반 투자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농촌주민의 복지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보다 정확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강봉균 의원은 FTA 확대에 따른 농업 분야의 충격완화 대책 및 전략품목 육성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재정지원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축산업 부문 구조개선은 방역체계 개선 및 친환경 및 자원순환형 축산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관련 재정 집행 방안에 대하여는 양식어업 육성 및 어업인의 자율관리 강화 필요성, 수협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의 개선 필요성, 수산물 비축사업 등 어민·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지방재정 분과 (3.30 오전)

“지방재정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재정 분과 토론회에는 이종혁·임영호 의원과 관련 상임위원회 등 국회 관계자, 행정부처 및 관련 기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혁·임영호 의원과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취약성 문제 및 지방세 세원확충 필요성, 지역발전사업 예산의 중앙정부 의존문제, 사회복지 지출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문제, 지방정부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방지 및 책임성 강화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취약성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의존 재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등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지역발전사업 예산의 중앙정부 의존 문제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자율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이종혁 의원), 특히 자치구의 경우 자체 세입이 더욱 취약하므로 세원확보 및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영호 의원)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지출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문제에 대하여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보육료, 교육 등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과 지방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토론자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예산집행의 효율성·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되었고 불필요한 시설건립·운영 등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 경제산업 분과 (3.30 오후)

“중소기업·SOC 등 경제예산의 효율적 편성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산업 분과 토론회에는 박상은·강창일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관계자, 국토해양부 등 행정부처 및 관련 기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상은·강창일 의원과 김준모 건국대 교수,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보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중소기업·SOC 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지원되어야 하며,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R&D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의 재정지원비중의 축소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산업발전 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매칭을 통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박상은 의원)도 제기되었다.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새로운 산업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R&D 강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기술 등 R&D 지원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다.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지원의 경우 정책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물류창고 등 하드웨어적 지원과 경영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강창일 의원) 등이 제기되었다.

□ 재정 분과 (3.31 오전)

“재정건전성 회복과 2012년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재정 분과 토론회에는 유일호·우제창·이한구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관계자, 행정부처 및 관련 기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일호·우제창 의원,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윤영진



계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 급증하는 복지재정수요,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사업 평가체제 구축 등을 활용한 지출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규정 정비와 과표 양성화 필요성(유일호 의원), 감세정책 재검토와 SOC 분야 총사업비 조정 및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필요성(우제창 의원) 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및 지방정부 채무, 국가보증채무 등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 재정준칙 설정 및 준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공공부문 채무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기되었다.

□ 조세 분과 (3.31 오후)

“향후 세제개편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세 분과 토론회에는 나성린·이용섭·이정희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관계자, 행정부처 및 관련 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53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임주영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나성린·이용섭·이정희 의원, 고윤화 대한LPG협회 회장, 김완일 세무법인가나



대표세무사, 윤상현 일신무역 대표, 이영 한양대 교수, 정구용 인지컨트롤스(주) 회장,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한금태 삼영기계(주)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하여 준조세 폐지·축소,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세 추가 완화, 신성장 산업육성의 세제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성(나성린 의원), 감세정책 재검토와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공평과세 구현 필요성(이용섭 의원), 높은 소득 탈루율과 과도한 지하경제 규모, 비과세·감면 과다, 미약한 자산과세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마련 필요성(이정희 의원) 등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강화 등 재산과세 합리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 방안, 취업모와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저출산대책,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세무조사제도 개선 등 공평과세구현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나.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 배분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5일,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에 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가 국가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예산총량과 재원배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가상승 등 국내 경제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수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점, 또한, 그동안 국회의 예산심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제출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국회의 재정의도를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점, 각 부처별·사업별 검토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심사가 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재정 총량과 재원배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토론회의 의의가 한층 강조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울 명지대 교수의 진행에 따라, ‘예산총량과 재정운용’과 ‘재원배분의 방향’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예산총량과 재정운용’에 대한 발제는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재원배분의 방향’에 대해서는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김광립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계위원장 등 총 6명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예산총량과 재정운용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정기조는 중기적으로 긴축적일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1년의 경제성장률은 4.1%, 2012년~2015년의 4개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개년 평균 4.7%에 비해 0.5%p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2011년 320.7조원, 2015년 409.5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11.6조원 흑자에서 2015년 28.1조원 흑자로 매년 흑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9.4조원 적자에서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나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달성목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제여건을 보면, 지난 7월 이후 미국, 유럽 국가 등 선진국의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의 역할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단기적 재정부양보다는 가계저축률을 높이고 기업부문에서 중소기업 및 가계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를 감안할 때 복지 프로그램 등 장기적인 지출의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세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총선과 대선이 내년 실시된다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5%가량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다소 긴축적인 것이나 재정건전화 필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의 GDP대비 비중이 4.2%로 OECD 평균 3.5%에 비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증세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 배분]

국회에서 이를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내년도 부처 예산요구안이 올해 예산 대비 7.6%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취득세감면 국고보조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규율의 도입을 통해 예산통제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7.6% 증가한 것은 4% 중반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및 유럽과 미국의 경제상황 악화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의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애를 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긴축재정기조를 견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정건전화가 여러 환경에 의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재정지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출을 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PAYGO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이러한 하강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지출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호주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를 위한 10~30년간의 중장기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계위원장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경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자원배분의 방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자원배분 현황과 추이를 검토하고 2012년 예산요구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예산요구안 기준으로 총 지출 증가율 7.6%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R&D(13.7%), 일반공공행정(11.0%), 교육(10.9%), 외교·통일(8.0%) 등 4개 분야이며, SOC(-13.8%), 문화체육관광(-6.2%), 환경(-5.8%), 농림(-2.7%) 등 분야는 2011년 예산에 비해 요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배분 추이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R&D(11.1%), 외교·통일(8.6%), 보건·복지·노동(7.7%) 분야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10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OECD 국가와 재원배분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일반정부 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방(Defense), 경제업무(Economic affairs), 주택 및 지역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Health), 사회복지(Social protection)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에 대해서는, R&D 분야의 경우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지만 14.1%라는 증액규모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의 경우 지출증가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의무지출의 증가와 신규 수요의 반영을 위해서는 기존 지출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국방 분야의 경우 인건비 증가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 분야의 경우 구조적 관점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예산 배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한나라당 김광립 의원은 국가경쟁력 및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복지 분야를 제일 많이 늘리되, 미래를 대비한 R&D 및 녹색성장 분야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 분야는 한 번 돈이 들어가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개선이나 중복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SOC예산 및 R&D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며, 등록금 지원 등을 위해 교육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R&D예산의 경우 중요성은 감안되나 총량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예산증가가 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은 교육 분야나 노동 분야의 예산이 보다 증대될 필요가 있는데, 영유아 교육이나 평생학습 등 우선순위가 미루어져 왔던 부분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예산의 구체적 배분 내역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계위원장은 R&D 분야의 경우 하부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입예산이 증가해도 산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OC 분야의 경우 건설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산증가율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복지지출의 경우 개인의 미래대비저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 및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편 토론회 전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60%의 전문가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았고, 2012년도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48%의 전문가가 올해보다 긴축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2012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비중의 증가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3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20%), 교육 분야(20%)를 꼽았으며, 지출비중의 감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30%), SOC 분야(18%), 국방 분야(14%)를 꼽았다.

다.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10월 31일에 개최된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가 국가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난 9월의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예산총량과 자원배분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는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예결위 등의 예산심의를 지원하고, 심사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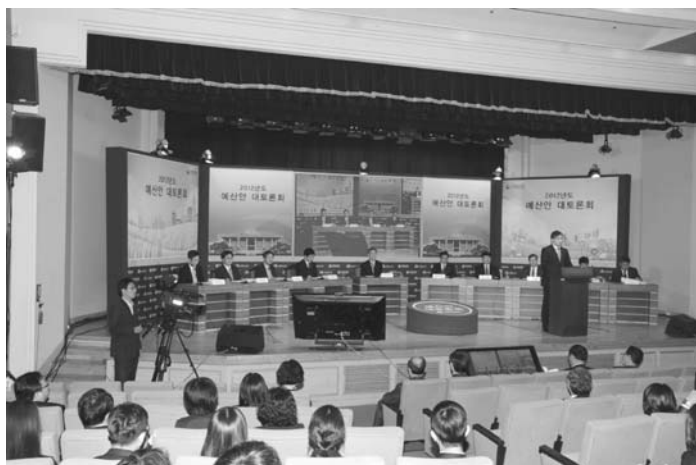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미

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악화, 청년실업 문제, 복지수준의 확대 요구와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는 광태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진행에 따라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나섰고, 토론자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계위원장 등 총 5명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주제발표

첫 번째 발제자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예산: 2012년 예산”이라는 주제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최대한 낮게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여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2012년의 재정수지를 -14조원, 국가채무를 GDP대비 32.8%로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2012년 예산안의 중점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린 예산’,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한 예산’에 두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단기적 경기대응 간의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였다.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2012년 국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2012년 경상성장률 등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세목별로 세수를 분석하였으며, 중기 국제수입 전망을 소개하였다. 2012년 경제성장률은 4.5% 가량으로, 국제수입은 2012년 6.8%, 이후 8%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도 예산안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이의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재원배분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수입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높은 증가율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지출 측면에서는 목적예비비 증액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재원배분과 관련하여서는 복지분야에서의 예산 증가 중 상당 부분이 연금 부문의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SOC분야에서의 도로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R&D분야에서의 투자효율성 감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네 번째 발제자인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2년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총수입 전망, 재정 전망 등을 정부의 전망치와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정부의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까지 재정긴축을 완화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 심사방향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로부터 각 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 및 입장 설명이 있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큰 골격을 보면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의 기초 위에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서민 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의 본연의 역할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보았다. 다만,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있는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더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지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또 낭비성 예산은 집중 점검해서 과감히 삭감하겠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거기에서 고통 받는 국민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일자리 민생원칙,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 원칙, 재정건전성 회복 원칙, 지역균형발전 원칙, 불요불급예산 삭감 원칙이라는 민주당의 다섯 가지 예산 심사 원칙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의 일자리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6천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복지예산도 자연증가분 외에는 별다른 증가가 없어 필요성 대비 과소하다는 점, 재정수입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업 중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첫 번째 토론자인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유럽의 재정위기 파급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도 재정을 너무 균형재정에 치우치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PAYGO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기적인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에 치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예산이 각 부처에 중복적으로 산재해 있고 성과가 저조한 경우도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증가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국회 결산심의를 보다 앞당겨 예산 편성 시부터 결산에 대한 결과를 환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의 특징이 부채 문제임을 감안할 때 부채 축소(deleveraging)가 진정되기까지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경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조심스럽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불안이 현재화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복지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부유층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좁히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값 대학등록금의 예를 들어 복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복지지출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유일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입과 세출을 나란히 확대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 아래 필요한 지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변경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도 시장매매의 생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토론을 통해 정부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올해에 비해 2만명 늘린 점, 또한 간접지원을 위해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자리 외에 SOC나 R&D 등 간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예산에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에 일조했다고 평가하였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수혜대상을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로 체계화해서 생애주기별로 또 복지서비스 부문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설계가 좋았다고 평가하였으며, 복지지출 자체는 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의 확대문제는 우리의 국가재정여력, 감당능력, 또 정책의 타당성 문제 또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서 그 규모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토론에서 복지비 증가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내년 예산안 중 복지비가 5.6조원 증가한 것은 상당 부분이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복지예산은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포퓰리즘이다,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복지지출의 과도한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하였다.

라. 교섭단체 예결위원 대상 예산안 및 결산 분석 보고

연번	개최일	주 제	교섭단체	발표자
1	8.16	2010회계연도 결산의 특징과 쟁점	한나라당	예산처 팀장급 이상
2	8.17	2010회계연도 결산의 특징과 쟁점	민주당	예산처 팀장급 이상
3	11.3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쟁점	민주당	예산처 팀장급 이상
4	11.7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쟁점	한나라당	예산처 팀장급 이상

마. 의원 대면보고 현황

□ 예산분석실

연번	개최일	토론내용	장소	대상
1	1.18	농산어촌지역 통학버스 국고지원 가능성 여부	의원실	백재현 의원
2	1.27	구제역 관련 예산현황 질의에 대한 밀착지원	의원실	홍준표 의원
3	3.25	지역발전사업 예산사업 현안	의원실	이종혁 의원 임용호 의원
4	3.28	장애인연금법 비용추계관련 법안보완사항 설명	의원실	박은수 의원
5	4. 4	재정법률개선과제 브리핑, 조기결산, 예산안 심사 충실화 방안 등	의원실	심재철 의원
6	4.15	2011년도 예산규모 및 특징, 우리나라 재정절차 및 제도 등	의원실	김세연 의원
7	4.19	2012년 재정운용 방향(재원배분)	본관 222호	이주영 의원 심재철 의원
8	6.29	2011년 재정개관 및 중기재정 전망	의원실	곽정숙 의원 김선동 의원
9	7. 8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재정현황	의원실	임해규 의원
10	7.26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재정현황	의원실	오제세 의원
11	7.27	무상보육 단계적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설명	의원실	박상은 의원 이정현 의원 오제세 의원

연번	개최일	토론내용	장소	대상
12	8.22	2010회계연도 청년고용대책 결산 분석	의원실	백성운 의원
13	12.22	지정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관련	의원실	강기정 의원 박기춘 의원 오제세 의원 주승용 의원

□ 경제분석실

연번	개최일	토론내용	장소	대상
1	4.19	2012년 재정운용 방향(재원배분)	본관 222호	이주영 의원 심재철 의원
2	4.25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의원실	서상기 의원
3	4.26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의원실	이한구 의원 권영세 의원 유승민 의원
4	4.28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의원실	이영애 의원 이용섭 의원
5	5. 6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의원실	나성린 의원
6	6.21	중기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의원실	강기정 의원
7	6.29	중기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	의원실	곽정숙 의원 김선동 의원
8	7.12	세입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의원실	임해규 의원
9	7.1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	의원실	정두언 의원
10	11.3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의원실	오제세 의원 이종구 의원
11	11.7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의원실	권영세 의원 김형오 의원
12	11.8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의원실	이한구 의원

바. NABO 재정현안 메일링 서비스 현황

연번	개최일	주 제	대상
1	2.23	재정법률 개선과제	전 국회의원
2	2.28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 상 쟁점	전 국회의원
3	4.13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 방안 연구	전 국회의원
4	6. 9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분석 보고서(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5	6.10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분석 보고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획재정부위원회
6	6.17	국회운영위 소관 결산분석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7	6.22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전 국회의원
8	6.24	교육과학기술위 소관 결산분석 보고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	7.28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전 국회의원
10	10.21	정무위 소관 예산안 보고서	정무위원회 예결위 간사
11	10.2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분석 보고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위 간사
12	10.2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분석 보고서(감사원)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 간사
13	10.24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분석 보고서	기획재정부위원회, 예결위 간사
14	10.24	국토해양위 소관 예산안분석 보고서	국토해양위원회, 예결위 간사
15	10.25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분석 보고서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 간사

2.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학계,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수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정·조세 분야와 사업평가 분야의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분석보고서 작성 및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처리에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예산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속
1	1. 7	사전예산제도	이덕만	건국대학교
2	7.20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11.10	복지재정 증가추이 국제비교	문상호	성균관대학교

[경제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속
1	1.13	국민연금 장기전망	박석민박사	국민연금연구원
2	1.13	사회복지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박형수박사	한국조세연구원
3	1.14	건제와 위임의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개혁 모형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4	2.25	DSGE 모형의 활용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정용승	경희대 경제학과
5	2.25	재정통계 개편안 평가	허웅	딜로이트 회계법인
6	3. 4	건강보험급여 장기전망	박일수 최기춘 이동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속
7	3. 7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가전략	전성훈	통일연구원
8	3.22	군인연금 장기추계	문채봉 장재영	국방연구원 국방연구원
9	3.24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본 복지정책	현진권	아주대학교
12	4.29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및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13	5. 4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14	5.12	제1회 조세정책연구회 세미나	최천규 최영렬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	5.27	에너지 세재개편 정책방향	김승래	한림대학교
16	6. 9	부가가치 세제	김승래	한림대학교
17	6.14	보험료 부과 관리	김진규	국민건강보험공단
18	6.28	보험료 부과체계 및 개선방안	전용배	국민건강보험공단
19	7.15	저축은행과 공적자금	김상조	한성대학교
20	7.21	개인신용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분석	이영숙	코리아크레딧뷰로
21	8.11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체계 분석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22	8.18	세원확대 위한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23	9. 2	독일 중소기업의 발전배경과 육성정책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24	9.22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한상국	전북대학교
25	10. 5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와 세계경제환경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26	10.21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최이배	좋은기업자배구조연구소
27	11.10	한국의 자본주의 4.0 논의의 현황과 과제	강석훈	성신여대
28	11.11	세계화와 성장친화형 진보	홍종학	경원대학교
29	11.18	론스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제안	전성인	홍익대학교
30	12. 2	글로벌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 과거	김정식	연세대학교
31	12.13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의 주요 내용	양동희	통계청
32	12.21	임팩트금융과 사회혁신기업	권영준	경희대
33	12.23	복지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박원암	홍익대

[사업평가국 전문가 간담회]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소속 및 직위
1	1.20	해외자원개발전략 : 패키지딜을 중심으로	박영우 박진석	대의경제정책연구원 한국석유개발공사
2	1.28	미래연구 동향과 시사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2. 5	청년 고용 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4	2. 9	청년 관련 일자리지원 사업의 동향 및 정책방향	전병유	한신대
5	2.18	국가 산업단지관리 평가	장철순 박영철	국토연구원 안양성결대
6	3.11	국제공항사업 평가 관련	이영혁 이강석	한국항공대 한서대
7	4.20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용민 지대식	강남대 국토연구원
8	5.13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I	김숙희 김한일	솔리데오 K4M
9	5.14	성과보고서 관련	금재덕	서울시립대
10	5.14	국가정보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II	장인석 윤서일	삼성SDS LGCNS
11	7.15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사업 평가	이교선	한국교통연구원
12	8.25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	고계현	경실련 국제위원회
13	9. 1	LH공사 부채급증의 원인 및 재무위험성 평가	이종권	토지주택연구원
14	10. 1	항만공사기관운영 평가	류동근	한국해양대
15	10. 8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개선방향	이시욱 장윤종 김의성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연세대 국제대학원

나. 포럼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각 실·국별 포럼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산분석포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1	1.27	「대한민국 재정 2011」 작성계획수립 및 포럼	예산분석실 전 직원
2	2.22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상 쟁점 내부포럼	산업예산분석팀 변재연
3	4.7 ~ 5.20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관련 부처·기관 업무협의	예산분석실 전 직원
4	6.6 ~ 6.2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내부포럼	”
5	6.27 ~ 7.1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내부포럼	”
6	8.18 ~ 10.11	「2012년도 예산안」 관련 부처·기관 업무협의	”
7	10.5 ~ 10.18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내부포럼	”
8	10.25 ~ 10.27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내부포럼	”
9	11.30	농업분야 재정지출 분석과 과제 내부포럼	산업예산분석팀 서세욱

[경제분석포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1	3. 2	제1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2	3.16	제2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3	3.30	제3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4	4. 1	제4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5	4. 6	제5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6	5.12	제6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7	5.26	제7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8	5.30	제8차 장기재정분석 포럼	경제분석실
9	6. 8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효과 분석	세수추계팀 성명기
10	6.16	통일비용에 대한 기준연구 검토	경제정책분석팀 신동진
11	6.22	제9차 장기재정전망 포럼	경제분석실
12	6.28	제10차 장기재정전망 포럼	경제분석실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13	7. 6	재정통계개편 및 정부범위 설정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산정	삼일회계법인 오창걸
14	7.18	제11차 장기재정전망 포럼	경제분석실
15	8.18	제12차 장기재정전망 포럼	경제분석실
16	9.14	제13차 장기재정전망 포럼	경제분석실
17	9.21	보건의료 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서강대 홍석철
18	10.27	소득물가별 물가지수의 작성과 실질소비의 추이	경제정책분석팀 장인성
19	12.12	제14차 장기재정전망 포럼	경제분석실

[사업평가포럼]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1	2.14	ODA 시스템 발전방안 토론회 (국회 UN-MDGS 포럼주최)	사업평가국장 박용주
2	2.25	「금융위원회 주요사업 평가」 관련	이충언 동상일
3	3. 9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평가 관련	허가형
4	3.15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조영철
5	3.15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관련	경제사업평가팀
6	3.18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산업사업평가팀 안태훈
7	3.23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	정무성 강혜규
8	4.25	국가조달사업 평가 관련	사회사업평가팀 박홍엽
9	5.11	정부 규제개혁 평가 관련	행정사업평가팀 여차민
10	5.18	국가 R&D 사업 평가 관련	산업사업평가팀 윤성식
11	6. 1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관련	강광규

연번	개최일	주 제	발표자
12	6.16	국립대병원 결산관련	김소윤 이정열
13	6.20	한국농어촌공사 결산관련	배민식 주원철 이은수
14	6.20	한국전력공사 결산관련	조영탁 이근대 김정훈
15	6.22	공공기관 결산평가 관련	공공기관평가팀
16	6.23	성과보고서 평가 관련	사회사업평가팀
17	6.24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관련	행정사업평가팀
18	7. 5	공공기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현황과 문제점 관련 사업평가 포럼	공공기관평가팀 전수연
19	7.12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평가 관련	경제사업평가팀
20	8.16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지원사업 평가 포럼	사회사업평가팀 김소정
21	12. 6	보금자리 주택사업 평가 관련	산업사업평가팀 안태훈
22	12. 8	환경영향평가메타평가 관련	사회사업평가팀 김상우

3. 정보화 사업

2011년에는 메일링서비스를 개선하여 적시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내부 시스템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향상,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중점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메일링시스템의 기능 등을 보완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조사분석시스템에 전자결재 등의 업무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정보인프라 측면에서는 DB보안장비를 구입,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업무망과 인터넷으로 분리·운용 및 듀얼PC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국내·외 해킹 시도로부터 개인정보DB 및 업무DB를 보호하고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 메일링서비스 개선

2004년 구축된 메일링시스템은 대량메일 발송 시 처리속도가 느리고 스팸메일 차단 등으로 인한 발송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기능 개선이 필요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보고서용, 재정현안브리핑용, 공지사항용 등의 메일템플릿을 다양하게 재 디자인하여 적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메일발송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처리속도 향상 및 오류분석·통계 등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국회의원 이메일 주소 정비 및 템플릿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발송 처리속도 향상 ○ 오류분석·통계 등 기능 강화 ○ 이메일주소 정비 ○ 템플릿 디자인 개선
사업기간	2개월(2011. 10.~12.)

NABO 최신보고서

홍길동 국회의원님



- 보고서명 : 2012년도 예산안 총괄
- 발간부서 : 경제예산분석팀
- 발간일 : 2011년 11월 1일

보고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다운로드

2012년도 예산안 총괄

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하에,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기존의 부처별 사업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차례

-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 II. 분야별 재원배분
- III. 2012년 거시경제 전망
- IV. 총수입 및 세제개편안
- V. 재정건전성
- VI. 성인지 예산서
- VII. 성과계획서



NABO 홈페이지



NABO twitter



지난메일보기



NABO 메일링 추천하기

NABO 메일링 2012-02

nabo

NABO 메일링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대표전화: 02-2070-3114 문의메일 w3@nabo.go.kr

[개편된 메일링서비스]

□ 조사분석시스템 개선

조사분석시스템은 국회의원 또는 국회 위원회의 재정 관련 조사·분석 요구 내용과 그 회답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구축되었으며, 검색과 통계, 회답자료 열람 신청/승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분석 요구 접수·회답보고서 작성·전자결재 등의 업무프로세스를 추가 적용하여 시스템 활용도 및 요구/회답 현황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분석요구 접수·회답보고서 작성 업무프로세스 추가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과 업무연계 ○ 통계기능 강화 및 관리기능 추가
사업기간	2.5개월(2011. 10.~12.)

[개편된 조사분석시스템]

□ 공공기관재무DB 개선

공공기관재무DB는 2009년에 최초 구축되어 2009~2010 회계연도 자료 및 2011년도 신규 지정 기관의 자료 등 최신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재무분석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고 각 재무제표의 주석 및 기관 재무관련 뉴스 수집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공공기관 재무 분석·평가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2009~2010 회계연도 자료 입력 ○ 2011년도 신규 지정 기관 추가 ○ 재무 분석에 대한 지표 신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표기 ○ 기관 재무관련 뉴스 제공
사업기간	3개월(2011. 9.~12.)

공공기관 재무 DB시스템 관리자 [프로젝트팀] | Log-out | 관심기관

기관정보 | 기관뉴스 | 재무제표 | 재무분석 | 정부지원예산 | 수입지출현황 | 차입금현황 | 운영관리

1 기관정보검색

기관분류: :: 기관유형 :: :: 소관부처 :: 년도 2010

기관명: 새로고침 ↺

기관요약정보 기관편람 정부지원현황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비율분석 수익성지표 안정성지표 성장성지표 생산성지표
 재무분석 현금흐름분석 수익구조분석 수익성분석 재무구조분석

대차대조표

기관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최종수정
(사)전국연합회관연합회	4,097	704	3,393	2012-01-03
(재)영동·정동국장	3,446	1,332	2,114	2012-01-03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16,612	7,653	8,959	2012-01-03
(재)체육인재육성재단	1,472	1,315	157	2012-01-03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793	374	419	2012-01-03
(재)한국장애인개발원	65,347	6,950	58,397	2012-01-03
(주)강원랜드	2,609,745	508,617	2,101,128	2012-01-03

2 기관 자산 및 부채내역

단위:역원	기관분류	자산	부채	자본
공기업(시장형)		1,162,195	574,367	587,828
공기업(준시장형)		2,737,358	1,872,946	864,412
기타공공기관		4,735,374	3,628,701	1,106,672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82,766	89,812	92,954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796,072	415,313	380,939

3 기관 손익 내역

단위:역원	기관분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공기업(시장형)		638,908	-2,256	6,060
공기업(준시장형)		347,446	24,549	23,165
기타공공기관		871,261	79,178	68,897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74,902	19,544	15,29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535,992	-8,687	-3,776

4 기관 현금 흐름

단위:역원	기관분류	현금의증가	기초의현금	기말의현금
공기업(시장형)		5,052	3,193	8,246
공기업(준시장형)		35,503	22,638	43,719
기타공공기관		5,114	70,126	73,043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1,921	14,832	26,753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1,516	43,031	44,533

5 공지사항

· 2009년 3월 월례 보고..	2009-03-29	· 2009년 3월 월례 보고..	2009-03-29
· 변경 관리 회의 일정	2009-03-29	· 변경 관리 회의 일정	2009-03-29
· IT Call Center 개편 안내	2009-03-29	· IT Call Center 개편 안내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6 기관뉴스

· 2009년 3월 월례 보고..	2009-03-29	· 2009년 3월 월례 보고..	2009-03-29
· 변경 관리 회의 일정	2009-03-29	· 변경 관리 회의 일정	2009-03-29
· IT Call Center 개편 안내	2009-03-29	· IT Call Center 개편 안내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 서비스 신청 처리 절차 변경	2009-03-29

[개선된 공공기관재무DB 시스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국내·외 해킹 시도로부터 개인정보DB 및 업무DB를 보호하고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DB보안장비를 구입, 설치하였고, 네트워크를 업무망과 인터넷으로 분리·운용 및 듀얼PC를 도입하는 등 정보보안 및 보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예산정책 지식포럼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부터 「예산정책 지식포럼」을 개최하여, 조직 내·외부 간 국가 재정과 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의 계기는 폭넓은 지식과 정확한 현안 인식에 토대를 둔 재정분석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예산정책 지식포럼」은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2011년 총 4회 개최되었다.

가. 제1회 예산정책 지식포럼

주 제	국회의 연중 예산심의 방안—사전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시간·장소	2011. 7. 11(월) 16:00~17:50/ 국회의정관 105호
발제·토론	발 제 : 이덕만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정토론 : 지동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

□ 개최

주영진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이후 7년 9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예산정책 지식포럼과 같은 토론과 학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히면서, 조직 내·외부 간 재정·현안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의 연중 예산심의와 관련한 주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안으로서, 직원들에게 많은 학습과 고민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

이덕만 교수는 ‘사전예산(pre-budget)제도’를 도입·시행 중인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동 제도에 내리는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

의 도입으로 예산 심의가 1년 내내 이루어짐에 따라 국회의 부담이 커지고, 재정운용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 제도는 재정개혁을 위해 새로운 재정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활성화와 국회 연중 예산심의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사전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정토론

지동하 입법조사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와는 별도의 ‘재원배분소위(가칭)’를 설치하여, 분야·부문별, 부처별 재원배분에 대한 의결이 정부에 지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용중 경제정책분석팀장은 사전예산심의·의결의 대상, 의결의 형식 및 효력, 논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례로 제시된 유럽 각국의 현재 재정상황이 우리와 비교하여 건전한지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함과 동시에, 관료에 의한 예산팽창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의한 예산팽창도 가능하므로 자율통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나. 제2회 예산정책 지식포럼

주 제	복지재정과 복지정책
시간·장소	2011. 8. 19(금) 16:00~17:30/ 의정관 105호
발제·토론	발 제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지정토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 주제발표

안중범 교수는 현행 복지정책에 대하여 실태파악 부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부재, 정책의 목적과 대상 불명확, 부처간 정책 중복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향후 복지정책은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이어야 하며, 비용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중복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복지의 패러다임을 소득보장 중심에서 소득보장 및 서비스 제공의 균형으로 변화시키고, 저비용-고효율의 복지정책을 위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trust)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지정토론

윤석명 연구위원은 어떤 복지제도든 비용을 부담한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내실화될 때까지는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복지지출을 조달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제3회 예산정책 지식포럼

주 제	글로벌 재정위기와 재정·금융정책의 대응방안
시간·장소	2011. 9. 26(월) 16:00~17:30/ 국회의정관 105호
발제·토론	발 제 :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지정토론 :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장)

□ 주제발표

강동수 박사는 먼저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요청으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8월 5일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 주식시장의 불안정 등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의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달리 이번 위기에서는 지난 3년간



재정 및 통화정책의 소진으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경기의 하강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부재하며, 정치리스크로 인하여 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 간 정책 공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지정토론

임일섭 박사(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누적과 재정수지 악화는 주로 과거의 전쟁비용,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위축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미국은 조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중장기적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에 기인한 재정위기 우려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신후식 거시경제분석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하의 재정·금융정책 방향으로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금융정책 유지, 가계저축률 제고를 통한 국내 금융시장의 기능 및 규모 확대, 충분한 외환유동성 확보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제4회 예산정책 지식포럼

주 제	한국 조세개혁의 방향
시간·장소	2011. 11. 25(금) 16:30~18:00/ 국회의정관 105호
발제·토론	발 제 : 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정토론 :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주제발표

진주성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는 최근의 세율 인하나 구간 신설 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기존 조세체계의 특성, 세수의 필요성, 조세의 왜곡효과 및 조세부담의 공평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세제를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경제위기나 복지요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배경을 가진 것임을 강조했다며, 부유세 요구를 단순한 정치 공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제대로 된 세계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치구조와 경제구조, 기존 조세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청사진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정치권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 지정토론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법인세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데 반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은 점을 꼽으며 법인세 인하 철회를 비판했다. 또 조세경쟁(tax competition)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수이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조세분석심의관은 구체적인 세계개편 방향으로, 유류세의 유종별 세율이 외부효과 교정에는 미흡하므로 CO₂ 배출이 많은 등유·경유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2011~2012년에 일몰도래하는 비관세 감면항목 118개 중 17개 항목(4.2조원)의 축소·폐지를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5. 대외협력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원의장단 등 외국의회 의원단, 경제부처 공무원 방문단 등이 총 9차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한국의 재정제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의회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원의장단 방문

1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재정위원회 무파마디(T. A. Mufamadi) 위원장 등 10인의 의원단과 수행원 일행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남아공 의원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과 기능, 연혁, 처장 임명 절차, 국회의 위원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주요 업무 성과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반 사항을 소개받았다.

□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 의원단 방문

1월 31일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 의원단 일행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의원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과 기능, 연혁, 처장 임명 절차, 국회의 위원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주요 업무 성과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반 사항을 소개받았다.

□ 미국 연방의회 의원보좌관 일행 방문

3월 21일, 미국 연방의회 의원보좌관 16명 및 수행원 일행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과 기능, 연혁, 처장 임명 절차, 국회의 위원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주요업무 성과 등을 소개받았다.

□ 몽골 경제부처 대표단 방문

6월 20일, 다그바 볼드바타르(Dagva Boldbaatar) 몽골중앙은행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재정부, 중앙은행 등 몽골경제부처방문단 8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 처장을 예방하

였다. 몽골방문단은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인적 구성 및 주요 직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 NABO의 경제전망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 호주 정치 차세대지도자 대표단 방문

6월 27일, 호주 정치차세대지도자 방한단 일행(단장: 데이비드 부시바이(David Bushby) 연방상원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장을 예방한 다음 NABO의 조직,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고 상호 토론을 벌였다.

□ 파키스탄 예산국 공무원단 방문

7월 7일, 파키스탄 예산국 무하마드 아프잘(Muhammard Afzal) 국장 등 16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를 공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받았다.

□ 우즈베키스탄 재정부 조세관련 공무원단 방문

11월 17일, 우즈베키스탄 재정부의 조세관련 공무원 방문단(단장: 아시즈 토시마토브(Aziz Toshmatov) 과장) 20인이 NABO를 방문, 처장을 예방한 후 NABO의 조직과 기능 등 일반현황을 소개 받고 우리나라 재정시스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방문단

11월 25일, 일본의회 중의원 사무국 직원단이(단장: 테라야마 에이이치 과장보좌) NABO를 방문, 처장을 예방한 후 NABO의 역할과 업무 등 일반현황을 소개 받고 의회 시스템 및 예·결산 심의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호주대사관 외교관 방문

12월 7일, 주한 호주대사관 마이클 화이트(Michael Wight) 외교관이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일반현황을 소개받고 한국의 예산제도 및 의회 내 예산심의절차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에 의거 총 18인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4월 29일 김동건 서울대 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4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15인)가 구성되었으며, 더욱 폭넓은 자문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이인실, 전영섭, 황윤원 위원 등 3인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였다.



[2011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 일자	회의 안건
제1차 회의 2011.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현황 보고
제2차 회의 2011.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살림 대토론회(총 3회) 평가 및 개선방향 ○ 분석 대상 재정현안의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분석실의 예산안·결산 분석시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재정현안 ○ 내년도(2012년) 주요 분석 주제에 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및 빈곤문제」에 관한 자문 — 「장기 재정 분석」에 관한 자문 ○ 재정성과 관련 제도에 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계획서·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 내년도(2012년) 재정사업평가 주제 자문

[제4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

(가나다 순)

	성 명	비고	현 소속 및 직위
1	김동건	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철도문화재단 초대이사장
2	권기현	위원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3	김성진	”	환경대학교 총장
4	박완규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5	박태규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6	백웅기	”	상명대학교 부총장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7	윤영진	”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8	이만우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9	이인실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10	이혜경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11	임인규	”	국회입법지원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12	임주영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13	장필화	”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14	전영섭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	전주성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16	정진용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7	천혜숙	”	안동대 인문대학장
18	황윤원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7. 교육훈련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약직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2011년 6월 1일자로 제정하여 예산정책처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들이 국회공무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행정실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습득을 위해 행정실무원 기본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역량강화특강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육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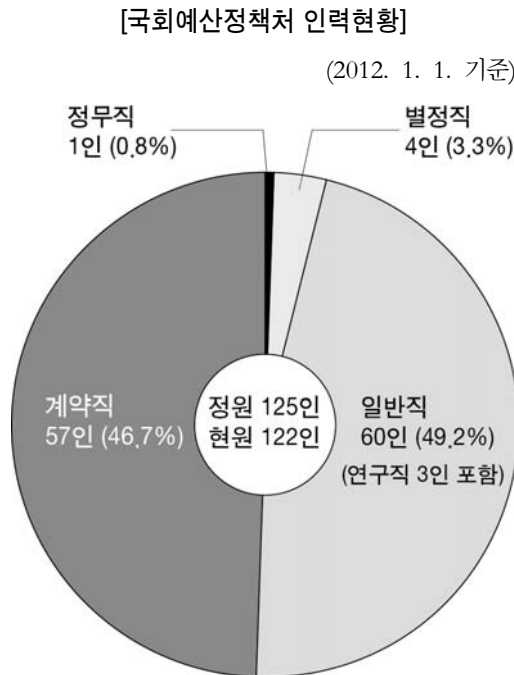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이수시간
1	행정실무원 기본교육	6.7~6.10	23명	10시간
2	전반기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7.11~7.22	25명	40시간
3	하반기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11.21~11.25	20명	15시간

[핵심역량강화특강 현황]

연번	일시	강의주제	초빙강사
1	2. 22	건강도 재능이다	서재걸 (STC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
2	5. 30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SNS의 이해와 운영	구창환 (인맥경영연구원 원장)
3	11. 23	대중문화로 배우는 소통의 리더십	이승재 (동아이지에듀 총괄이사)

8. 연구직공무원 제도 도입 · 운영

국회예산정책처는 신분안정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약직 직위의 50%를 연구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2011년 10월부터 경제분석관 1인, 사업평가관 2인 등 3개 직위에 대하여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합격한 3인은 2012년 1월부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9. 2011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에 수행된 의정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9일까지, 조사대상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으로 회신율은 87.5%(295명 중 258명)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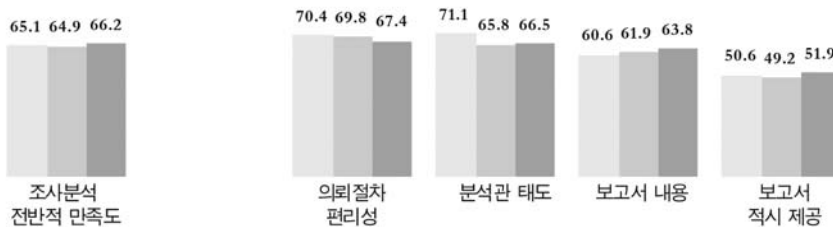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분석 만족도]

(Base=조사분석 의뢰경험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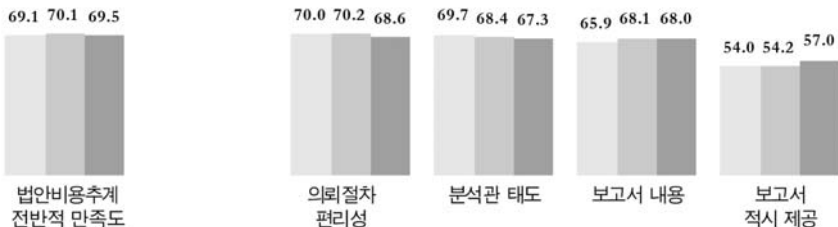
2009년 (N=180) 2010년 (N=158) 2011년 (N=185)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Base=법안비용추계 의뢰 경험자, 점)

2009년 (N=180) 2010년 (N=158) 2011년 (N=183)



[분석보고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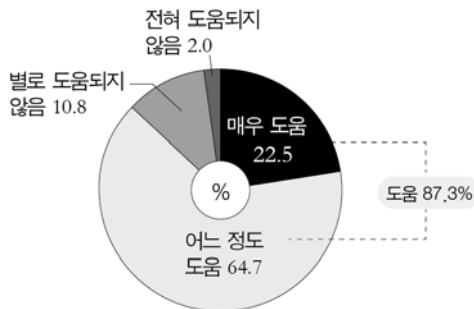


[보고회/대면보고 만족도]



[나라살림 대토론회 도움정도]

(Base=나라살림 대토론회 경험자 (N=102), %)



10. 연구용역 현황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1년 중 4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완결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예산안 및 결산 분석, 경제정책 및 경제전망, 사업평가 등 주요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정보화 사업 등에 활용하였다.

[연구용역과제 현황]

연번	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소 속	
1	예·결산 심사시 정보화예산의 적정성 분석 방안 연구	최영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	자체사업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금 경비 구분의 적정성 분석	김정용	회계법인 이촌	
3	효율적인 재정거버넌스 (Fiscal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4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정병욱	이화여자대학교	
5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주요국의 세계잉여금 처리방법과 의회의 재정의지 반영 현황을 중심으로	임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예 산 분석실	6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원성훈	(주)코리아리서치센터
7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황희만	(주)엠비씨프로덕션	
8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정군오	호서대학교	
9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과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에 관한 정책 대안 모색	이용모	건국대학교	
1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활용한 비용추계 방법 연구	진윤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11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해외사례 및 예산안 심의 과정을 중심으로	김철희	한남대학교	

	연번	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소 속
	12	성과관리와 예결산 심의의 연계성 제고 방안 연구—국회 예결산 심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홍재	안양대학교
	13	민영교도소 해외운영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황영호	군산대학교
	14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이원희	한경대학교
	15	지방소비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순	건국대학교
	16	저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이학희	영산대학교
	17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편 연구 및 재정소요액 추계	조임곤	경기대학교
	18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김상헌	서울대학교
경 제 분 석 실	19	재정통계 개편 및 정부범위 설정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산정	오창걸	삼일회계법인
	20	미시자료에 기초한 소득분위별 가계의 조세 부담 및 혜택 분석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21	주요 국제기구와 중앙은행의 경제예측모형 비교 분석	김기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2	보건의료 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홍석철	서강대학교
	23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시장이자율에 관한 실증분석	서은숙	상명대학교
	24	수혜자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체계 분석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25	에너지세계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김승래	한림대학교
	26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우석진	명지대학교
	27	주식양도차익 규모 추계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최원근	하나금융연구소
	28	빈곤대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이만우	고려대학교
사 업 평 가 국	29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황희만	(주)엠비씨프로덕션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관련 설문조사	권혁주	(주)아이알씨
	31	은행감독 제도에 관한 은행업 종사자의 인식 조사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32	보험감독 제도에 관한 보험업 종사자의 인식 조사	정제련	공공경영개발원
	33	SOC 분야별 적정 투자 규모에 관한 연구	정재호	목원대학교

	연번	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소 속
	34	공공요금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연구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35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옥동석	인천대학교
	36	가계지출 요인의 구조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분석	유경원	상명대학교
	37	자원비축 규모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박호정	고려대학교
	38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기준 마련 및 사례 적용 연구	김일중	동국대학교
	39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 체계 의 재정립 방안	이학교	한경대학교
	40	2011년 공공기관 재무 DB 고도화 사업	(주)아이로그	
기 획 관 리 관	41	조사분석 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주)젠솔소프트	
	42	메일링 서비스 개선사업	(주)에이메일	
	43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원성훈	(주)코리아리서치센터

11. 직원연구모임 현황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은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모임 구성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연구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8개 모임이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2011년 직원연구모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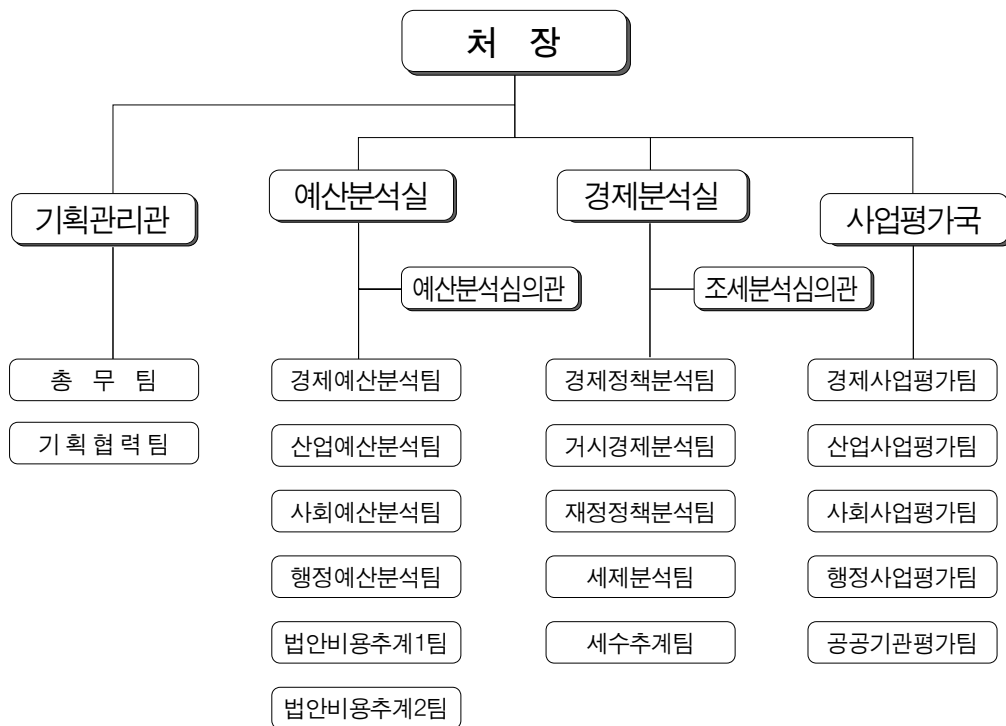
연번	연구모임명	대표자	인원
1	계량경제연구회	정문종 팀장 (행정예산분석팀)	10인
2	경제모형연구회	이남수 팀장 (재정정책분석팀)	11인
3	NABO LOHAS 연구회	신후식 팀장 (거시경제분석팀)	10인
4	재정관련조직연구회	박용주 국장 (사업평가국)	21인
5	재정제도연구회	원종욱 분석관 (사회예산분석팀)	12인
6	예산정책연구회	김춘순 실장 (예산분석실)	15인
7	일본 경제·문화연구회	서세욱 팀장 (산업예산분석팀)	14인
8	평가방법론연구회	이상현 팀장 (사회사업평가팀)	13인

IV. 부 록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 조직 및 예산

가. 조직



(2011. 12. 31. 기준, 단위: 인)

	정원	현원	과부족
처장실	4	4	-
기획관리관	19	18	△1
예산분석실	41	41	-
경제분석실	31	29	△2
사업평가국	30	30	-
합계	125	122	△3

※ 박사 42인, 입법고시 34인, 공인회계사 3인, 변호사 2인 등 (2011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직제」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원 116인 → 125인 증원)

나. 예산

2011년도 예산(현액기준)은 총 133억 3,000만원으로, 성질별로는 인건비 76억 1,200만원, 기본경비 20억 9,900만원, 주요사업비 3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본경비는 행정실무원 및 자료분석보조요원 운영, 교육훈련, 전산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경제분석 및 세수추계,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 개발, 예산정책처 정보화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7,612	7,439	173
기본경비	2,099	1,844	255
주요사업비	3,619	3,421	198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	659	625	34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1,021	965	56
경제분석 및 세수추계	819	771	48
국가주요사업평가 및 평가모형 개발	808	755	53
예산정책처 정보화	312	305	7
합계	13,330	12,704	626

2. 연혁

- 1994. 8. 23. 국회사무처에 법제예산실 신설
- 2000. 1. 1. 법제예산실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개편
- 2003. 6. 12.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예산결산지원기구의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3. 7. 1. 「국회예산정책처법안」 본회의 의결
- 2003. 7. 3. 국회예산정책처설립준비기획단 구성
- 2003. 7. 18. 「국회예산정책처법」 공포
- 2003. 9. 15. 국회예산정책처실무준비팀 구성
- 2003. 9. 1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구성
- 2003.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
- 2003. 10. 20. 제1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최 광” 임명 (~2004. 11. 18.)
- 2003. 10. 28.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정
- 2003. 12. 23. 청사 입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빌딩 17~19층)
- 2004. 3. 3.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
- 2005. 6. 2. 제2대 국회예산정책처장 “배철호” 임명 (~2008. 7. 14.)
- 2005. 11. 4. 청사 이전 (여의도 서울증권 빌딩 10~12, 14층)
- 2006. 12. 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 2008. 1. 18. 청사 이전 (국회의정관 4~5층)
- 2008. 9. 1. 제3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임명 (~2011. 1. 21.)
- 2009. 4. 2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 2010. 4. 2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 2011. 3. 4. 제4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임명
- 2011. 8. 26.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3.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가. 국회법

第22條의2 (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2003. 7.18. 법률 제6931호
(타)일부개정 2006.10. 4. 법률 제805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4조 (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

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①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 칙 <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國會圖書館長”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 칙 (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123호
 일부개정 2006.12.7. 국회규칙 제139호
 일부개정 2009.4.27. 국회규칙 제150호
 일부개정 2010.4.27. 국회규칙 제156호
 일부개정 2011.8.26. 국회규칙 제16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국 및 관 밑에 두는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5.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4.27>

제6조(경제분석실) 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2010.4.27>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4.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2. 경제정책의 연구·분석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4.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5. 국가채무의 분석
6. 국가세입의 추계
7.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8.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0.4.27>

제7조(사업평가국) 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4.27>

1.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2.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3.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제8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7]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제123호, 2003.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국회사무처법 및 국회도서관법”을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을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

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국회에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을 각각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법률학”을 “법률학·경제학·재정학”으로 한다.

②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도서관장”을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도서관장”을 각각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③국회기록물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총무과”를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2조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 및 국회도서관직제 제2조”를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로 한다.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중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을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국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39호,2006.1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9.4.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2011.8.26>

국회에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125
정무직 계	1
국회에산정책처장	1
별정직 계	5
비서(7급상당)	1
별정직(7급상당) 또는 계약직	1
별정직(7급상당)	2
별정직(8급상당)	1
일반직 계	119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	2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4
3급·4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10
4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7
4급·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1
4급·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25
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4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계약직	25
7급 또는 계약직	3

라. 법규 제·개정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에 관련 규칙·내규·지침 등 모두 20건의 법규를 제·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법규 제·개정 현황]

(기준 : 2011. 1. 1 ~ 2011. 12. 31)

연번	법규명	제·개정	법규번호	시행일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1	목표관리 및 성과연봉 등 지급평가지침	개정	공동지침 제44호	1. 19	성과연봉 구분지급 대상자에 대변인(별정직공무원에 한함), 부대변인 및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활동보조요원을 추가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현실화하고 의장실 등의 비서업무 수행자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내규 제39호	3. 9	실·국의 정원을 조정하여 예산안·결산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내규	개정	내규 제40호	4. 5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회,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재정·경제·정책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4	국회예산정책처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개정	내규 제41호	4. 14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2011. 4. 7)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총 채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절차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5	예산정책처 실·국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지침 제45호	4. 15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회,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재정·경제·정책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자문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연번	법규명	제·개정	법규번호	시행일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6	국회에산정책처 계약직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제정	지침 제46호	6. 1	교육훈련의 과정, 실시기관, 이수과정 등 국회예산정책처 계약직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회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7	국회에산정책처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개정	내규 제42호	6. 1	국회에산정책처 일반계약직공무원 연장심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필요시 연장심사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8	국회에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내규 제43호	6. 7	경제예산분석팀의 총괄기능 및 세입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분석실 내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9	국회에산정책처 행정실무원 운용지침	전부 개정	지침 제47호	6. 22	기존의 「국회에산정책처 사무보조원 운용지침」에 따른 사무보조원의 명칭을 행정실무원으로 변경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심사 및 행정실무원에 대한 보수책정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실무원 운용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10	국회에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	제정	지침 제48호	6.22	국회에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원, 자료분석지원요원 및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복무사항 및 채용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것임.
11	국회에산정책처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 및 조정지침	제정	지침 제49호	7. 15	국회에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 및 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 보수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연번	법규명	제·개정	법규번호	시행일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12	국회에산정책처 포상금 수여지침	개정	지침 제50호	8. 19	보고서 포상의 종류 중 공동보고서의 기준을 현행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여 개인보고서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포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3	국회에산정책처 직제	개정	국회규칙 제168호	8. 26	전문계약직을 신분안정화를 위하여 직제정원에 반영하고 분석·평가 인력을 보강하여 의정지원 역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14	국회에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내규 제44호	8. 26	국회에산정책처 직제 개정(2011. 8. 26.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으로 전문계약직의 직위가 별정직 또는 일반계약직으로 정원에 반영되고, 사회예산분석 및 세수추계의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분석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과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15	국회에산정책처 복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지침 제51호	9. 28	예산정책처 직원이 겸직 및 외부교육기관에서의 수학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적절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16	국회공무원 근무성적평정치침	개정	공동지침 제52호	11. 1	속기직렬 및 경위직렬 6급 동급자 현원이 상급자 및 하급자 현원에 비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집단평정자 구성 비중을 조정하고,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2011.8.26., 국회규칙 제166호)에 따른 부서개편사항을 근무성적평정의 평정단위에 반영함.

연번	법규명	제·개정	법규번호	시행일자	제·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17	다면평가운영지침	개정	공동지침 제53호	11. 2	다면평가에서 동급자 및 하급자의 평정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각각의 비중을 동일하게 하고, 「국회 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 제6조의 개정(2011.7. 15., 국회규정 제 687호)에 따라 종합명부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값과 다면평가결과 순위값 합산비율이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8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제정	내규 제45호	11. 2	예산 및 정책과 관련된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은 정책국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예산 및 정책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직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편집 위원회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등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9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	제정	지침 제54호	11. 1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임.
20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	지침 제54호	11. 2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실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맡은 직무에 알맞고 품위있는 대외직명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언론보도 현황

2011년에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인용·보도한 기사는 모두 1,202건으로 2010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21일 「환경비즈니스」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탱크”의 경제·산업 분야에서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한 17위에 등재되었다.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

(단위: 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658	463	451	381	652	1,363	1,233	1,202	6,403

[2011년 월별 언론보도 현황]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88	47	118	65	51	52	179	164	109	127	139	63	1,202

5. 발간물 총 목록 (100권)

가. 정기 분석보고서

실·국	팀	연번	제 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실 공동	1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2.23
	법안비용추계1팀	2	2010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4.15
	경제예산분석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2011	6.15
	실 공동	4	[2010결산분석시리즈 1]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분석	6.21
	실 공동	5	[2010결산분석시리즈 2]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7. 1
	실 공동	6	[2010결산분석시리즈 3]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7. 1
	실 공동	7	[2010결산분석시리즈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7. 1
	실 공동	8	[2010결산분석시리즈 5]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	7. 1
	실 공동	9	[2010결산분석시리즈 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	7. 1
	실 공동	10	[2010결산분석시리즈 7]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총괄	7.25
	실 공동	11	[2010결산분석시리즈 8]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	7.25
	실 공동	12	[2010결산분석시리즈 9]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	7.25
	실 공동	13	[2010결산분석시리즈 10]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I	7.25
	실 공동	14	[2010결산분석시리즈 11]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7.27
	실 공동	15	[2010결산분석시리즈 12]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8. 5
	법안비용추계1팀	16	재정법령집 2011	8.26
	실 공동	17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1]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10.26
	실 공동	18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10.26
	실 공동	19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3]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	10.26
	실 공동	20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4]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10. 26
	실 공동	21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	10. 26
	실 공동	22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6] 2012년도 예산안 총괄	11. 1
	실 공동	23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7]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	11. 1
	실 공동	24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8]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11. 1
	실 공동	25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9]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I	11. 1
	실 공동	26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10]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1. 7
	실 공동	27	[2012예산안분석시리즈 11]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11. 7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팀	28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 제9호)	2.28
	실 공동	29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4.21

실·국	팀	연번	제 목	발간일
	거시경제분석팀	30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 제10호)	6.27
	거시경제분석팀	31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 제11호)	8.29
	거시경제분석팀	32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1~2015년 경제 전망	10.19
	세수추계팀	33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10.31
	세제분석팀	34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10.28
	재정정책분석팀	35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31
	세수추계팀	36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0.31
	세수추계팀	37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10.31
	재정정책분석팀	38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종합편)	11.10
	거시경제분석팀	39	NABO 경제동향&이슈 (통권 제12호)	11.17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팀	40	[공공기관평가 11-01]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법률 개선과제	3.29
	경제사업평가팀	41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 (총괄편)	3.30
	경제사업평가팀	42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 (운영 법사 정무 기재 외통 국방 행안)	3.30
	경제사업평가팀	43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II (교과 문체 농림 지경)	3.30
	경제사업평가팀	44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추진현황 분석 IV (보건 환노 국토 여성)	3.30
	경제사업평가팀	45	[사업평가 11-01] 금융위원회 예산사업평가—일반회계	3.31
	산업사업평가팀	46	[사업평가 11-02]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평가	4.20
	사회사업평가팀	47	[사업평가 11-0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5. 2
	경제사업평가팀	48	[사업평가 11-04] 국가조달사업 평가	5.18
	산업사업평가팀	49	[사업평가 11-0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	5.26
	행정사업평가팀	50	[사업평가 11-06] 정부 규제개혁 평가	5.31
	사회사업평가팀	51	[사업평가 11-07]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6.23
	산업사업평가팀	52	[사업평가 11-08] 국가 R&D 사업의 기업 지원 성과 평가	6.27
	공공기관평가팀	53	[공공기관평가 11-02]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7.11
행정사업평가팀	54	[사업평가 11-09]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평가	7.21	

실·국	팀	연번	제 목	발간일
국 공동		55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 (총괄)	7.26
국 공동		56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I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부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7.26
국 공동		57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II (교육과학기술 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7.26
국 공동		58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IV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여성가족)	7.26
경제사업평가팀		59	[사업평가 11-10]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평가	8. 8
사회사업평가팀		60	[사업평가 11-1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평가	9. 5
공공기관평가팀		61	[공공기관평가 11-03] 공공기관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 6
국 공동		62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I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부 기획재정)	10.21
국 공동		63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II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10.21
국 공동		64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II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10.21
국 공동		65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IV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여성가족)	10.21
사회사업평가팀		66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10.26
공공기관평가팀		67	[사업평가 11-12]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10.27
산업사업평가팀		68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10.31
국 공동		69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중점분석 및 총괄평가]	10.31

나. 현안·예산정책·법안비용추계·특별 보고서

실·국	팀	연번	제 목	발간일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70	[예산정책보고서 제13호] 재정법률 개선과제	2.23
	법안비용추계1팀	71	[법안비용추계 제8호] 법안비용추계 미첨부요건 강화 방안	2.25
	산업예산분석팀	72	[예산현안분석 제39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상 쟁점	2.28
	법안비용추계1팀	73	[예산정책보고서 제14호]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	4.13

실·국	팀	연번	제 목	발간일
경제분석실	실 공동	74	2010~2014 Economic Outlook and Fiscal Analysis Summary of Publications 2009	1.17
	거시경제분석팀	75	[경제현안분석 제61호]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2. 1
	세수추계팀	76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기존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6. 1
	재정정책분석팀	77	[경제현안분석 제62호]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6. 7
	재정정책분석팀	78	[경제현안분석 제63호]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5
	경제정책분석팀	79	[경제현안분석 제64호]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8. 8
	세제분석팀	80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9. 3
	재정정책분석팀	81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9.21
	경제정책분석팀	82	[경제현안분석 제65호]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9.27
	재정정책분석팀	83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11.11
	경제정책분석팀	84	[경제현안분석 제66호]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11.17
	재정정책분석팀	85	[경제현안분석 제67호]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11.18
	거시경제분석팀	86	[경제현안분석 제68호]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베이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12.13
	세수추계팀	87	[경제현안분석 제69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12.16
세제분석팀	88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12.23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89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0호]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8.23
	산업사업평가팀	90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1호]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9. 7
	사회사업평가팀	91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2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9.28
	행정사업평가팀	92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3호] 방위력 개선사업 재정운용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31
	행정사업평가팀	93	[사업평가현안분석 제34호]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12.16
기획관리관	나라살림 대토론회 TF	94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5.31

다. 정기간행물

실·국	팀	연번	제 목	발간일
기 획 관 리 관	기획협력팀	95	예산춘추 (2010 겨울호)	1.15
	기획협력팀	96	2010 NABO 연차보고서	3.14
	기획협력팀	97	Summary of NABO Publications 2010	3.14
	기획협력팀	98	예산춘추 봄호 (2011)	5.18
	기획협력팀	99	예산춘추 여름호 (2011)	7.18
	기획협력팀	100	예산춘추 가을호 (2011)	10.31

□ 기획·조정

손석창 기획관리관
임재봉 기획협력팀장

□ 자료 수집

장석립 기획협력 1담당
이상오 기획협력 2담당
이영주 예산·사무 담당
김현민 기획·감사 담당
유희진 의원요구자료·법무 담당
오지은 교육·대외협력 담당
박승지 정보화 1담당
정명호 정보화 2담당
이주호 홍보·편집 1담당
박은애 홍보·편집 2담당

□ 편집

이주호 은방울

NABO 2011 연차보고서

발간일 2012년 3월 20일

발행인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인 손석창 기획관리관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쇄 동국상사 (TEL 02·362·3851)

ISBN 978-89-6073-519-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2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1
연차보고서
nabo